

〈研究報告書 93-01〉

租稅體系의 適正化에 관한 研究

韓國租稅研究院

序 言

租稅制度는 다양한 經濟現狀을 모두 수용해야 하며 동시에 相衡하는 利害關係를 조화시켜 나가야 하므로 稅法이 複雜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經濟現상과 이해관계자의 집단이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잦은 稅法改正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經濟學者뿐만 아니라 行政官僚와 政治家들도 오랫동안 이러한 잦은 세법 개정의 가운데서 改正의 方向을 定立하려고 노력하여 왔다.

잦은 세법개정의 渦中에서 때로는 너무 部分的인 문제에 얽매어 稅制를 全體的인 體系의 견지에서 包括적으로 보는 視覺을 잃어버리고 세제개편의 方向 감각을 상실하게 될 우려도 있는 것이다. 사실 아무리 部分的으로 보아 타당한 稅制改編案이라 하더라도 全體的인 租稅體系의 입장에서 보아서는 그릇될수 있는 것이다.

本 報告書는 세제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조명하여 우리나라의 租稅體系가 나아가야 할 方向을 適正租稅論(optimal taxation theory)의 입장에서 모색하고 있다. 조세의 부과는 經濟的 效率(efficiency)과 所得分配上의 衡平(equity)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효율과 형평은 대부분의 경우 서로 相衡關係에 있고, 適正租稅體系의 摸索은 이러한 相衡關係를 公式化하는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사실 衡平에 관한 문제는 價値判斷의 領域에 속하는 것이므로 실증경제학의 영역을 넘는다고 할 수 있으나, 實證經濟學은 여러가지의 相異한 價値判斷에 대한 假定下에서 어떠한 조세체계가 적절한 것인가를 논리적으로 보여 준다는 데 그 기여가 있다고 할 것이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 租稅體系의 適正化에 관한 論議와 稅制改編의 전체적인 方向定立에 一助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本 報告書는 本院의 孫光洛 研究委員이 집필하여 완성하였다. 著者는

자료의 수집과 정리에 도움을 준 金建洙 研究員과 林駿 研究員, 적정조세조합의 계산을 위한 simulation의 전산처리에 도움을 준 池星林 研究員, 그리고 원고 정리에 도움을 준 尹惠順 研究助員에게 感謝하고 있다.

끝으로 本 研究報告書에 담겨진 모든 內容은 著者 自身の 意見이며, 本 研究院의 公式 見解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3년 9월

韓國租稅研究院

院長 朴宗淇

目 次

I. 序論	11
II. 理論的 接近方法 : 所得課稅 對 消費課稅 比率의 適正化	13
1. 이론적 모형	14
2. 통계자료 및 선호파라미터의 推計	20
가. 소득에 관한 통계	21
나. 지출에 관한 통계	24
다. 세제파라미터의 추정	25
라. 저축잔고	30
마. 선호파라미터의 推計	32
3. 적정 소득·소비과세 비율의 시뮬레이션 결과	33
III. 理論的 接近方法 : 所得課稅 對 財産課稅(土地保有課稅) 比率의 適正化	43
1. 재산과세의 근거와 경제적 효과	44
가. 재산과세의 근거	44
나. 재산(보유)과세의 경제적 효과(토지를 중심으로)	46
2. 재산과세(토지보유과세)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한 논의	51
3. 재산과세(토지보유과세) 비중의 설정	56
IV. 經驗的 接近方法 : 稅源別 回歸分析	65
1. 총체적 조세부담 수준	75

2. 조세구조	77
가. 소득과세	77
나. 내국 소비과세	79
다. 무역과세	82
라. 기타조세	84
3. 세원별 조세부담능력 방정식의 추정	85
가. 자료	85
나. 분석모형	87
다. 분석결과	89
4. 세원별 회귀분석결과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의 조세 구조	91
 V. 要約 및 맺는 말	 94
 <參考文獻>	 99

表 目 次

<표 2-1> 임금계층별 임금을 및 노동공급량	23
<표 2-2> 계층별 소득세 과세소득과 소득세 부담액 계산	27
<표 2-3> 실효 간접세율 계산 I	28
<표 2-4> 실효 간접세율 계산 II	29
<표 2-5> 도시근로자 가구의 저축잔고	31
<표 2-6> 효용함수의 選好파라미터의 추정치	32
<표 2-7> 사회후생함수의 가중치와 稅制파라미터 조합의 변화에 따른 후생변화	35
<표 2-8> 最適稅制	36
<표 2-9> 근로소득 과세자 비율	39
<표 2-10> 근로자 가구 면세점의 GNP 대비 비율	39
<부표 2-1> 1991년 도시가구의 가계수지 관련 재산제세 납부액 계산	41
<표 3-1> 1990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57
<표 3-2> 주택보급률 추이	58
<표 3-3> 소유형태별 주택수	58
<표 3-4> 자가소비용 토지와 영업용 토지의 구분	59
<표 3-5> 귀속임료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계산	60
<표 3-6> 미실현 자본이득의 과세이연에 따른 조세 감면액 계산	62
<표 3-7> 현행 토지보유세율과 적정 토지보유세율의 계산	63
<표 4-1> 조세수입의 구성 (GDP 대비 비율)	66

<표 4-2> 조세수입의 구성 (총조세수입 대비 비율)	70
<표 4-3> 소득수준별 조세수입의 구성 (GDP 대비 비율)	74
<표 4-4> 소득수준별 조세수입의 구성 (총조세수입 대비 비율)	74
<표 4-5> 간접세 세수의 對 GDP 비율	83
<표 4-6> 세원별 조세부담률 방정식 추정	90
<표 4-7> 우리나라의 세원별 실제 조세부담률과 추정 조세 부담능력의 비교	92
<표 5-1> 각국의 재산관련 과세의 구조	98

그림 目次

[그림 2-1] 소득의 분류	21
[그림 3-1] 토지가격과 토지관련소득	54

I. 序 論

租稅란 개개의 稅目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전체로서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여 세제에 요구되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있다(車駟權, 1985). 따라서 전체적인 조세부담률뿐 아니라 租稅의 體系 내지는 租稅의 構造도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조세체계를 가장 대표적으로 반영해주는 지표가 直·間稅 비율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매년 예산편성시 국회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이 조세부담률과 더불어 직·간세 비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꾸준히 직접세의 비중이 제고되고 있으나, 아직도 외국과 비교하여 보면 직접세의 비중이 다소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국세기준 직접세 비중 : 1991년 우리나라 45.9%, 1989년 일본 74.2%, 1990년 대만 57.0%, 1989년 미국 91.7%, 1989년 서독 53.2%, 1989년 영국 55.4%, 1988년 프랑스 39.1%).

直接稅 위주의 조세구조와 間接稅 위주의 조세구조는 각각 상반되는 장·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直接稅는 사회의 형평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저축·투자·근로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세무행정의 집행을 어렵게 하는 반면, 間接稅는 이와 반대되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떠한 조세구조가 바람직한지는 사실 상당부분에 있어서 가치판단의 문제이고 따라서 경제학의 분석을 넘어서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떠한 조세구조가 좋은가의 문제, 즉 適正 直·間稅 비중의 분석과 관련하여 많은 부분은 경제학의 실증분석 범위 이내의 문제이고, 사회의 형평에 대한 고려도 思考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경제학이 寄與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적정 조세구조와 관련하여 소득과세 對 소비과세 비율의 최적균형에 대하여는 많은 논의가 있었다(제2장에 소개되는 문헌을 참조). 그러나 직접세 내에 있어서 소득과세와 재산과세간의 비율이 어떻게 설정되어

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학계에서 별 논의가 없었는 듯하다. 本稿는 이론적 모형을 이용하여 제2장에서 먼저 所得課稅와 消費課稅間의 최적균형문제를 분석하고 이어서 제3장에서 所得課稅와 財産課稅間의 비율, 특히 個人所得課稅와 土地保有課稅間의 비율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의 문제를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各國의 조세 및 경제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稅源別 조세부담능력 방정식을 도출하고, 이러한 세원별 조세부담능력 방정식이 示唆하는 우리나라의 적정 조세구조와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구조를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제2장과 제3장에서 논의된 이론적 관점에서의 적정 조세구조와 제4장에서 각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도출한 적정 조세구조를 비교하고, 이러한 논의가 내포하는 우리나라의 조세구조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언급한다.

II. 이론적 접근방법 : 소득과세 對 소비과세 비율의 적정화

이 章에서는 Atkinson 등(1980), 本間正明 등(1985), 그리고 表鶴吉(1985)에 의하여 연구되어 온 所得·消費課稅間 最適比率에 대한 실증 분석을 우리나라의 1991년 통계자료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특히 表鶴吉(1985)은 우리나라의 1983년 당시의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적정 직·간접세 비율을 계산해 보았는데, 당시 통계자료의 처리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로 賃金率과 노동공급량에 관한 통계의 이용에 있어서 그는 현실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가계의 능력분포에 관한 假定을 근거로 하여 각 소득계층별 임금률과 노동공급량을 推定하여 이용하고 있는데, 현실의 통계와 비교해 보면 그의 추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소득세율과 면세점의 추정에 있어서 몇 가지 計量經濟學上의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셋째로 간접세율의 추정에 있어서 통계자료 처리상의 오류를 범하여 현실과 크게 다른 세율을 추정하여 이용하고 있다.

그의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회적 형평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稅收의 전부를 所得稅로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소 극단적인 결론에 이르렀는데, 이는 위에서 살펴본 통계자료 처리상의 오류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本稿에서는 이와 같은 오류를 시정하여 적정 소득과세 對 소비과세의 비율을 좀더 올바르게 계산해 보고자 한다.

직·간접세 비율을 측정하는 데는 보통 ① [직접세 / (직접세 + 간접세)]의 공식, 혹은 ② [개인소득세 / (개인소득세 + 내국소비세)]의 공식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①의 방법에 의한 1991년 우리나라의 직접세 비중은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하여 47.3%이나, 법인소득과세와

관세를 제외한 ②의 방법에 의한 1991년 우리나라의 개인소득과세의 비중은 33.9%인 것으로 나타났다. 本稿에서는 ②의 방법을 사용하여 소득과세 對 소비과세의 最適比率을 찾아보려고 한다.

먼저 제1절에서는 이론적 모형을 소개하는데, 예산제약식에 있어서 약간의 변형을 제외하면 종래의 이론적 모형과 차이가 없다. 제2절에서는 통계자료의 처리와 稅制파라미터 및 효용함수의 選好파라미터의 추정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이 부분은 종래의 통계자료 처리 및 파라미터의 추정과 크게 다르다. 마지막으로 제3절에서는 적정 소득·소비과세 비율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에 대하여 언급한다.

1. 이론적 모형

이론적 모형은 表鶴吉(1985)이 사용한 本間正明 등(1985)의 直·間稅比率 분석모형을 원용하되, 예산제약식만 우리의 현실에 맞추어 약간 수정한다.

먼저 경제는 개개의 家計로 구성된다고 보고 각 가계는 上添字 i 로 표현한다. 각 가계는 효용극대화를 목표로 하며, 각 가계의 효용은 현재의 소비수요량 c^i 및 餘暇(노동공급량 l^i) 그리고 미래의 소비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현재의 저축잔고 S^i 와 今期의 저축플로우량 s^i 의 합계의 함수라 가정한다. 각 가계가 선택해야 할 경제변수는 노동공급량 l^i , 소비수요량 c^i 및 저축플로우량 s^i 이다.

$$U^i = U^i(c^i, S^i + s^i, l^i) \dots\dots\dots (2.1)$$

가계는 다양한 형태의 소득을 얻으며, 소득세를 납부한 후의 가처분 소득으로 자신의 지출에 충당한다. 가계의 소득은 크게 소득세 과세소득과 소득세 비과세소득(NT)으로 분류되며, 소득세 과세소득은 다시

가계가 노동을 공급하여 얻는 가구주의 임금소득($w \cdot l$, 단 w 는 임금을)과 기타의 소득세 과세소득(OT)으로 나뉜다. 따라서 각 가계의 소득총액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I^i = w^i l^i + OT^i + NT^i \dots\dots\dots (2.2)$$

우리는 가계에 부과되는 個人所得稅와 內國消費稅를 분석대상으로 하며, 여기서 이자 및 배당소득을 소득세 비과세소득에 포함시킨다. 그 이유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대부분이 원천분리과세되며, 우리가 사용하는 자료인 『도시가계연보』에서 가계의 이자 및 배당소득을 稅後所得으로 기록하기 때문이다.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 함수는 다음 식으로 정의된다.

$$T^i = t_i (w^i l^i + OT^i - a) \dots\dots\dots (2.3)$$

위 식에서 t_i 은 소득세율을, a 는 소득세 면세점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稅制를 상징하면 가계의 가치분소득 D^i 는 다음 식으로 정의된다.

$$D^i = (1-t_i)(w^i l^i + OT^i) + t_i a + NT^i \dots\dots\dots (2.4)$$

다음에는 가계의 지출(E)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가계의 지출은 소비지출(c)과 저축(s) 그리고 비소비지출(NC)로 구성된다. 대부분의 내국 소비세는 가계가 아닌 기업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소비세가 100% 가계에 轉嫁된다고 가정하면 소비세는 소비재가격을 그만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재가격을 p , 소비세율을 t_c 그리고 소비재 수요량을 c 로 표시하면 각 가계의 소비지출액은 $(1+t_c)pc$ 로 표시되며, 따라서 각 가계의 지출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시된다.

$$E^i = (1 + t_c)pc^i + s^i + NC^i \dots\dots\dots (2.5)$$

따라서 가계의 예산제약식은 식 (2.4)와 식 (2.5)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begin{aligned} (1+t_c)pc^i + s^i \\ = (1-t_l)(w^i l^i + OT^i) + t_l a + NT^i - NC^i \dots\dots (2.6) \end{aligned}$$

식 (2.6)을 제약식으로 하고 식 (2.1)을 최대화하는 소비수요량, 저축 플로우량 및 노동공급량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begin{aligned} (c^i)^* = c^i [(1+t_c)p, (1-t_l)w^i, (1-t_l)OT^i \\ + t_l a + NT^i - NC^i] \dots\dots\dots (2.7) \end{aligned}$$

$$\begin{aligned} (s^i)^* = s^i [(1+t_c)p, (1-t_l)w^i, (1-t_l)OT^i \\ + t_l a + NT^i - NC^i] \dots\dots\dots (2.8) \end{aligned}$$

$$\begin{aligned} (l^i)^* = l^i [(1+t_c)p, (1-t_l)w^i, (1-t_l)OT^i \\ + t_l a + NT^i - NC^i] \dots\dots\dots (2.9) \end{aligned}$$

또한 이 세 가지 식을 효용함수인 식 (2.1)에 代入함으로써 간접효용 함수(indirect utility function)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begin{aligned} V^i = V^i [(1+t_c)p, (1-t_l)w^i, (1-t_l)OT^i \\ + t_l a + NT^i - NC^i] \dots\dots\dots (2.10) \end{aligned}$$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은 각 가계가 달성할 수 있는 효용수준이 소비 재가격(p), 임금률(w), OT, NT, NC 등의 각종 외생변수(이들 변수가 외생변수임은 다음 장에서 설명한다), 그리고 稅制파라미터들인 소비세율(t_c), 소득세율(t_i), 과세최저소득(a) 등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각 가계의 입장에서 본 세제모형을 고찰하였으나 이제 정부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 정부의 세수총액 T는 개개 가계의 납세를 전부 합한 다음 식으로 정의된다.

$$T = \sum_{i=1}^m t_i (w^i l^i + OT^i - a) + \sum_{i=1}^m t_c p c^i \dots\dots\dots (2.11)$$

이 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동일한 수준의 세수총액을 다양한 세제파라미터들의 조합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특정 稅制파라미터의 선택은 가계의 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제 사회전체의 후생을 규범적으로 논의해 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회후생함수를 정의하자.

$$W = \left[\sum_{i=1}^m (U^i)^r \right]^{1/r} \quad (r \neq 0, r \leq 1) \dots\dots\dots (2.12)$$

위와 같은 후생함수에서 r은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선호의 척도를 반영하는 파라미터이다. 즉 r=1인 경우는 피구·벤담(Pigou·Bentham) 流의 사회적 후생함수가 되어 사회적 후생에 관한 한 각 가계에 동일한 중요도가 부여되는 價値觀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편 $r \rightarrow \infty$ 인 경우에는 그 사회에서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한 가계를 최대한으로 중요시하는 價値觀을 반영하는 것으로 로울즈(Rawls) 流의 사회후생함수가 된다. 식 (2.12)의 후생함수에 특정한 r이 선택된다면 사회적 후생수준이 稅制과

라미터에 의존하고 있음을 규명할 수 있다. 먼저 사회적 후생함수에서 각 가계의 효용수준은 가계별로 最適化 행동이 있고 난 후의 효용수준이므로 식 (2.10)을 식 (2.12)에 대입한 다음 식이 성립한다.

$$W = \left[\sum_{i=1}^m (V^i)^r \right]^{1/r} \quad (r \neq 0, r \leq 1) \dots\dots\dots (2.13)$$

그런데 V^i 가 稅制파라미터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W 역시 稅制파라미터에 의존한다. 이제 이러한 모형을 원용하여 稅制파라미터 변동의 차별적 효과를 판별하는 실증분석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효용함수를 특정화할 필요가 있다. 각 가계의 효용함수를 Stern(1976)을 따라 다음과 같은 CES형으로 정의해 보자.

$$U_i = [\alpha_1 (c^i)^{-\mu} + \alpha_2 (S^i + s^i)^{-\mu} + \alpha_3 (1 - l^i)^{-\mu}] - \frac{1}{\mu} \dots (2.14)$$

(단, $\alpha_1 + \alpha_2 + \alpha_3 = 1$)

이 식에서 α_1 는 각 요소에 부여된 가중치이고 μ 는 대체력성(ϵ^i)와 다음 식으로 연결된다.

$$\epsilon^i = \frac{1}{1 + \mu} \dots\dots\dots (2.15)$$

이와 같이 CES형을 가정하면 효용함수를 특정화하는 것이 곧 選好 파라미터($\epsilon^i, \alpha_1, \alpha_2, \alpha_3$)를 특정화하는 것과 같다. 물론 이들 選好파라미터들은 觀測不可能한 變數이나 소비수요량(c^i), 저축플로우량(s^i) 및 노동공급량(l^i)은 觀測可能한 變數이고 가계소득조사에서 얻어진 자료를 이와 같은 효용최대화의 결과로 얻어진 것으로 가정하기로 한다. 즉, 관측치 $[(c^i)^*, (s^i)^*, (l^i)^*]$ 는 (2.6)의 예산식을 제약식으로 하고 식

(2.1)을 최대화한 것이라고 생각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효용최대화를 위한 必要條件을 만족하고 있다.

$$\frac{(c^i)^*}{1-(l^i)^*} = \left[\left(\frac{\alpha_3}{\alpha_1} \right) \frac{(1+t_c)p}{(1-t_l)w^i} \right]^{-\varepsilon^i} \dots\dots\dots (2.16)$$

$$\frac{S^i+(s^i)^*}{1-(l^i)^*} = \left[\left(\frac{\alpha_3}{\alpha_2} \right) \frac{1}{(1-t_l)w^i} \right]^{-\varepsilon^i} \dots\dots\dots (2.17)$$

$$\begin{aligned} &(1+t_c)p(c^i)^*+(s^i)^* \\ &= (1-t_l)w^i(l^i)^*+(1-t_l)OT^i+t_a+NT^i-NC^i \dots\dots (2.18) \end{aligned}$$

그런데 관측된 $[(c^i)^*, (s^i)^*, (l^i)^*]$ 는 식 (2.18) 즉, 예산식을 만족하고 있으므로 식 (2.16)과 식 (2.17)을 만족하는 選好파라미터를 결정하면 된다. 이들 식 (2.16) 및 (2.17)에 log를 취하고 代替彈力性을 소거하면 다음 식이 도출된다.

$$\begin{aligned} &H_1^i \log(1-\alpha_1-\alpha_3)-H_2^i \log \alpha_1 \\ &-[(H_1^i-H_2^i) \log \alpha_3+H_2^i H_3^i-H_2^i H_4^i]=0 \dots\dots\dots (2.19) \end{aligned}$$

$$\text{단, } H_1^i = \log [(c^i)^* / (1-(l^i)^*)] \dots\dots\dots (2.20)$$

$$H_2^i = \log [(S^i+(s^i)^*) / (1-(l^i)^*)] \dots\dots\dots (2.21)$$

$$H_3^i = \log [(1-t_l)w^i / (1+t_c)p] \dots\dots\dots (2.22)$$

$$H_4^i = \log [(1-t_l)w^i] \dots\dots\dots (2.23)$$

식 (2.19)에서부터 (2.23)까지에 나타나는 저축잔고, 價格파라미터, 稅制파라미터들은 觀測可能한 것들이다. 따라서 식 (2.19)는 α_1^i 와 α_3 를

미지수로 하는 방정식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계산을 단순화하기 위해 $\alpha_3 = 10^{-6}$ 으로 고정시키면 식 (2.19)는 결국 α_1 의 非線形方程式이 된다. 이제 $0 \leq \alpha_1 \leq 1$ 의 범위 내에서 非線形解法으로 解를 구할 수 있고 이를 $\alpha_2 = 1 - \alpha_1 - \alpha_3$ 에 대입함으로써 α_2 의 解도 구할 수 있다. 또한 식 (2.16) 또는 (2.17)을 이용하여 대체탄력성 ε^i 의 수치도 결정되므로 효용함수의 실증적인 특정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2. 통계자료 및 선호파라미터의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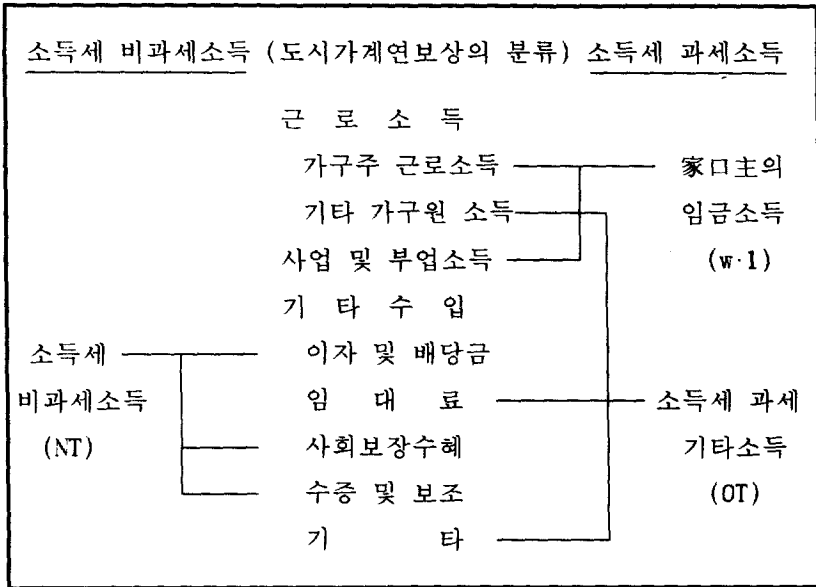
효용함수의 選好파라미터($\alpha_1^i, \alpha_2^i, \alpha_3$)를 추정하기 위하여 각 가계의 소득과 지출에 관한 통계와 稅制파라미터 및 저축잔고에 관한 통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本原稿에서는 개별 가계에 관한 자료가 없어 그룹 데이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소득과 지출에 관한 대부분의 통계는 1991년도의 『도시가계연보』(통계청)中 勤勞者 家口에 관한 통계에서 추출하였으며, 임금계층별 노동공급량은 1992년도의 『노동통계연감』(노동부)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하였고, 금융저축잔고에 관한 통계는 1991년도의 『가계금융이용실태조사』(국민은행)에서 추출하였다.

조사대상이 되는 가계는 각 조사기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가계의 행태로 보고 분석하는 데는 제약이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자의 수를 보면 『도시가계연보』는 2,762가구나 되고 『가계금융이용실태조사』도 3,000가구나 된다. 또한 『노동통계연감』의 조사대상은 총 455만 8,632명의 근로자로 나타난다. 우리와 같이 그룹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조사대상이 다르다 하더라도 표본추출에 있어서 심한 偏倚(bias)가 없는 한, 평균의 대표성은 유지된다고 본다.

稅制파라미터는 이상의 자료와 각종 세수통계를 이용하여 추계하였다.

가. 소득에 관한 통계

[그림 2-1] 소득의 분류



가계의 소득에 관한 통계는 대부분을 『도시가계연보』와 『노동통계연감』에서 추출하였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前述한 바와 같이 소득세 과세소득과 소득세 비과세소득으로 나뉜다. 소득세 과세소득은 다시 家口主의 임금소득과 소득세 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를 [그림 2-1]을 이용하여 도시가계연보의 통계와 연결시켜 보자.

[그림 2-1]에서 보듯이 소득세가 과세되는 임금소득의 범위에 가구주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 및 부업소득을 포함시킨 것은 사업소득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이 자신의 노동에 대한 귀속임금을 소득으로 얻게 되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其他 家口員의 근로소득을 家口主의 임금소득이 아닌 소득세 과세 기타소득에 포함시킨 점에서 本 原稿의 統計處理는 다른 연구에 있어

서의 통계처리와 다르다. 表鶴吉(1985)은 가구주의 근로소득과 사업 및 부업소득, 그리고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광의로 가계의 임금소득을 정의하고 임금률과 노동공급량을 계산하였다. 가구주의 임금률과 기타 가구원의 임금률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양자를 합하여 하나의 임금소득으로 정의하고 계산을 하여 얻게 되는 평균적 개념의 임금률과 노동공급량은 어느 누구의 임금률과 노동공급량도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가계의 선택에 있어서 가구주와 가구원이 평균적 개념의 임금률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각각 노동공급량을 결정한다고 보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이보다는 가구주가 자신의 임금률과 기타 가구원의 소득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자신의 노동공급량을 선택한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이자 및 배당금을 소득세 비과세소득에 포함한 것은 이자 및 배당금이 대부분 원천분리과세되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실제로 가계가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받을 때는 대부분 원천분리과세된 후의 稅後 이자·배당금을 受領하며, 가계는 이러한 稅後 소득을 자신의 소득으로 기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세과세 기타소득은 기타 가구원 소득, 임대료, 그리고 기타를 포함하게 되며, 소득세 비과세소득은 이자 및 배당금, 수증과 보조, 그리고 사회보장수혜를 포함하게 된다. 소득세 과세 기타소득(OT)과 소득세 비과세소득(NT)은 당해 기간에 있어서 家口主의 선택에 의해 좌우되지 않으므로 선택변수가 아닌 외생변수이다.

가구주의 임금소득은 임금률(w)과 노동공급량(l)에 관한 통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먼저 家口主의 임금률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도시가계연보』의 가구주 근로소득을 『노동통계연감』의 임금계층과 대응시켜 임금계층별 勤勞時間數를 보되, 다만 임금계층이 너무 폭넓게 설정되어 있는 곳은 補間法을 사용하여 10만원 단위별로 임금계층을 설정하여 해당 계층에 대한 勤勞時間數를 계산하였다. 가구주 근로소득을

이러한 근로시간수로 나누면 임금률이 된다.

〈표 2-1〉 임금계층별 임금률 및 노동공급량

소득계층 (천원/월)	가구주근로소득 (천원/월)	근로시간 (시간/월)	임금률 (천원/시간)	임금소득 (천원/월)	노동공급량 (시간/월)
150 미만	34.5	138.1	0.25	35.4	141.7
150~300	173.7	144.1	1.21	180.6	149.8
300~450	306.3	205.8	1.49	311.2	209.1
450~600	430.1	210.7	2.04	438.6	214.9
600~750	561.8	210.2	2.67	572.8	214.3
750~900	652.9	209.6	3.11	670.1	215.1
900~1,050	734.8	209.6	3.51	761.1	217.1
1,050~1,200	822.5	208.9	3.94	855.1	217.2
1,200~1,350	926.8	209.5	4.42	964.5	218.0
1,350~1,500	1,000.6	208.3	4.80	1,047.2	218.0
1,500~1,650	1,109.9	205.7	5.40	1,150.2	213.2
1,650~1,800	1,198.4	205.7	5.83	1,259.1	216.1
1,800~1,950	1,277.4	204.0	6.26	1,344.3	214.7
1,950~2,100	1,370.2	200.6	6.83	1,425.1	208.6
2,100 이상	1,734.5	189.1	9.17	1,857.0	202.5

주 : 임금률 = 가구주 근로소득 / 근로시간.

노동공급량 = 임금소득 / 임금률.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1991.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1992.

다음은 가구주의 노동공급량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가구주의 노동공급량은 가구주의 임금소득을 앞에서 계산한 임금률로 나누면 얻을 수

있다. 가구주의 근로소득에 적용된 임금률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 및 부업소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정한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표로 나타내면 <표 2-1>과 같다.

表鶴吉(1985)은 노동공급량과 임금률을 현실의 통계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가계의 능력분포가 총수입에 log를 취한 값과 같다고 가정하고 가계의 임금률과 노동공급량을 추정하였다. 그의 추정이 현실의 임금률 및 노동공급량을 비슷하게 묘사하느냐의 여부는 가계의 능력분포에 대한 가정의 현실성에 의존할 것이다. 노동공급량에 관한 그의 推定結果를 보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노동공급량이 항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고소득층일수록 임금률이 높은 경향이 있고, 임금률이 높은 경우 所得效果로 인하여 노동공급량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 노동공급량과 임금률을 『노동통계연감』의 통계에 의존하여 계산한 우리의 추정결과는 家口主의 勤勞所得이 月 1백만원(가계의 소득이 月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금률의 증가가 노동공급의 감소를 야기함을 보여 주고 있다.

나. 지출에 관한 통계

지출에 관한 통계는 畵的으로 『도시가계연보』에서 추출하였다. 가계의 지출은 소비지출(c)과 저축(s) 그리고 비소비지출(NC)로 구성된다. 가계의 예산제약식에서 消費支出(c)은 『도시가계연보』상의 소비지출에서 내국소비세가 제거된 純消費支出을 나타내며, 우리도 『도시가계연보』상의 소비지출을 $(1 + \text{현행 소비세율})$ 로 나눈 것을 가계의 순소비지출로 사용한다. 현행 내국소비세율은 11.1%로 추정되는데, 계산근거는 나중에 稅制과라미터를 계산할 때 보여주기로 한다.

다음으로 가계의 예산제약식에서 비소비지출(NC)은 『도시가계연보』상의 비소비지출에서 소득세를 차감한 것이다. 소득세의 계산도 나중에 稅制과라미터를 계산할 때 함께 보여주기로 한다. 비소비지출은 주로

재산세와 사회보장분담금 그리고 이자지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소비지출 수준 역시 當期에 가계의 선택에 의해 좌우되지 아니하므로 외생변수로 취급된다.

마지막으로 예산제약식에서 저축(s)은 소득세 납부 후의 가처분소득에서 비소비지출과 간접세를 포함한 소비지출을 차감하면 얻을 수 있다.

다. 세제파라미터의 추정

먼저 소득세율(t_i)과 소득세 면세점(a)을 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각 소득계층별 소득세 과세소득과 소득세 부담액을 알아야 한다. 각 소득계층별 소득세 과세소득은 가項에서 본 바와 같이 『도시가계연보』의 통계에서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도시가계연보』상의 조세항목은 소득세와 주민세뿐만 아니라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등 財産諸稅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가계연보』상의 조세항목에서 도시근로자 가구가 1991년중에 부담한 이러한 財産諸稅를 제거하면 소득세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도시가구가 부담한 財産諸稅額을 계산해야 하는데, 이에는 ①도시가구가 부담한 재산제세액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과 ②우리나라의 全家計가 부담한 재산제세액의 비율인 [재산제세액 / (소득제세액 + 재산제세액)]의 비율을 계산하여 이를 그대로 도시가계에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 1991년에 도시가구 전체가 자신의 가계수지와 관련하여 납부한 재산제세액을 ①의 방법으로 계산해 보면 총 4,391억원으로 추정되며(<부표 2-1> 참조), 이는 도시가계가 부담한 총직접세액의 16.5%에 해당한다. ②의 방법으로 계산해 보면 1991년에 우리나라의 全家計가 부담한 재산제세가 직접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4% 정도[(소득세 6,459.4 + 주민세701.5) / (재산세 275.5 + 종토세 518.1 + 도시계획세 307.3 + 공동시설세 105.5)]가 되는데, 가구당 소득은 도시와 농촌이 비슷하나, 地價는 도시가 압도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하여 우리는 ①의 방법에 의하여 도시가구의 재산제세액을 계산한 것을 사용한다.

다음으로 『도시가계연보』상의 조사대상 가구인 2,762가구가 1991년에 부담한 재산제세액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하여는 1991년의 都市家口數를 알아야 하는데, 1990년 都市家口數인 총 846만 5,826가구(자료 : 통계청, 『1990 인구주택 총조사 잠정보고서』, 1992)에 최근 5년간 평균 가구수 증가율 3.5%를 곱하면 된다. 따라서 도시가구가 부담한 총재산제세액 4,391억원 중에서 1991년에 『도시가계연보』상의 2,762조사대상가구가 부담한 재산제세액은 年 1억 3,856만원 혹은 月 1,154만 6,700원으로 계산된다 [$4,391\text{억원} \times 2,762 / (8,465,826 \times 1.035) = 1\text{억 } 3,841\text{만원}$].

『도시가계연보』상의 조사대상 가구가 부담한 재산제세액 月 1,154만 6,700원을 소득계층별로 배분하려면 소득계층별 부동산 가액의 분포를 알아야 한다. 『도시가계연보』를 보면 소득계층별로 임대료와 자가평가액으로 표시된 부동산 소득의 분포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러한 부동산 소득의 분포가 부동산 가액의 분포와 비례하며, 부동산 가액의 분포는 재산제세 부담액의 분포와 비례한다고 가정하고 1,154만 6,700원을 각 소득계층에 배분한다(張五鉉, 1992). 이렇게 계산된 각 소득계층별 평균 재산제세 부담액을 각 소득계층의 평균 총조세 부담액에서 차감하면 소득계층별 평균 소득세 부담액을 추정할 수 있다(<표 2-2> 참조).

<표 2-2>의 소득세 과세소득과 소득세 부담액의 통계를 이용하여 線形의 소득세 함수를 추정할 수 있다. 同 函數를 추정함에 있어 두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다. 첫번째는 우리가 사용하는 자료가 그룹 데이터라는 점이고, 두번째는 종속변수인 소득세 부담액의 값이 마이너스의 값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이다. 첫번째의 문제인 그룹 데이터의 異分散性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加重最小自乘法(weighted least square)의 기법을 사용하면 되는데, 가중치로 각 소득계층 標本數의 평방치($\sqrt{n_i}$)

를 사용하였다.

〈표 2-2〉 계층별 소득세 과세소득과 소득세 부담액 계산

(단위 : 가구, 천원)

소득계층	150 미만	~300	~450	~600	~750	~900	~1,050
조사가구수	16	38	126	242	367	380	347
소득세 과세소득	59.7	231.3	361.8	509.9	656.3	800.4	940.8
총조세 부담액	1.0	0.9	2.0	3.8	5.4	8.7	12.2
재산세 부담액*	1.4	1.6	1.9	1.7	2.1	2.8	3.3
소득세 부담액	0.0	0.0	0.1	2.1	3.3	5.9	8.9

소득계층	~1,200	~1,350	~1,500	~1,650	~1,800	~1,950	~2,100	2,100이상
가구수	274	226	175	134	99	76	54	210
과세소득	1080.8	1226.6	1376.5	1507.6	1655.7	1805.3	1940.7	2723.3
총조세	15.9	20.8	26.1	39.1	43.6	54.8	53.8	135.4
재산세*	3.9	4.8	5.4	6.5	6.4	7.1	7.6	10.8
소득세	12.0	16.0	20.7	32.6	37.2	47.7	46.2	124.6

- 주 : 1. 계층별 부동산소득의 총액 = (임대료 + 자가평가액) × 계층별 조사가
 구수.
 2. 계층별 부동산소득 총액의 점유비 = (계층별 부동산소득의 총액) ÷
 (순계층의 부동산소득 합계).
 3. 계층별 재산세부담 총액 = 11,548.7천원 × 계층별 부동산 총액의 점
 유비.
 4. 재산세 부담액* (계층별 1가구 평균) = 계층별 재산세부담 총액 ÷
 계층별 조사가구수.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1991.

두번째 문제는 제한적 종속 변수(limited dependent variable)의 문제인데, 이는 Tobit모형을 사용하면 된다. 이상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 함수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 = - 435.816 + 0.0513717 Y \quad \rho = 1792.84$$

(- 6.0) (10.7) (5.2)

위와 같이 추정된 선형의 소득세함수로부터 실질 한계소득세율(t_i)은 약 5.1%이고, 소득세의 실질적인 면세점(a)은 年 848만 3,600원 (=435,816/0.0513717), 혹은 月 70만 6,900원이라는 결과를 얻게 된다. 1991년의 경우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만을 고려하였을 때 4인가족 근로자의 면세점은 年 512만 9천원이다. 그러나 여기에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 등을 고려하고,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있으나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와 복지후생적 급여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면세점은 이보다 훨씬 높아지는데, 우리의 추정에서는 年 843만 8,600원이라는 결과를 얻게 된 것이다.

소비세율(t_i)은 財貨 및 用役稅 총액을 최종소비지출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다(崔 洸, 1987). 아래의 <표 2-3>을 보면 최근 우리나라의 실효 간접세율은 11% 내외이고, 1991년의 실효 간접세율은 11.1%임이 나타난다.

〈표 2-3〉 실효 간접세율 계산 I

(단위 : 억원, %)

	민간최종소비	정부최종소비	최종소비	재화 및 용역세	비율
1987	579,886	107,085	686,971	76,439	11.1
1988	664,677	124,871	789,548	91,041	11.5
1989	770,172	150,647	920,819	101,712	11.0
1990	918,817	183,236	1,102,053	130,667	11.8
1991	1,096,545	222,118	1,318,663	145,990	11.1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992.

表鶴吉(1985)은 1983년의 우리나라 실효 간접세율을 계산함에 있어 평균 근로소득세액을 소득세 대비 간접세 수입의 비율에 곱하여 간접세 부담액 평균을 구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실효 간접세율을 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가 계산한 당시의 실효 간접세율은 18.2%인데, 이는 너무 높은 수준이다.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의 방식으로 계산하면 당시에 도 실효 간접세율이 12% 내외에 불과하다.

그의 방법에 문제가 있음은 다음의 사실로도 증명된다. 그는 1983년의 평균 근로소득세액을 年 11만 1,077원으로 계산하였는데, 『도시가계연보』를 보면 1983년에 도시가계의 평균 조세납부액이 月 6,091원, 즉 年 7만 3,092원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도시가계연보』상의 조세납부액은 근로소득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나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이 금액은 근로소득세 금액보다 커야 한다. 그는 평균 근로소득세액으로 갑근세 납세의무자 1인당 평균 갑근세 납부액을 사용하였는데, 도시근로자 가구의 상당 부분이 면세점 이하(1992년의 경우 근로자의 56%가 면세점 이하임. 자료:재무부 세제실)인 점을 고려할 때 갑근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의 수를 제외하고 계산한 것이 이러한 추정상의 오류를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표 2-4> 실효 간접세율 계산 II

(단위 : 억원, %)

	민간최종소비	정부최종소비	최종소비	재화 및 용역세	비율
1982	340,013	61,103	401,116	45,426	11.3
1983	372,819	67,534	440,353	53,900	12.2
1984	407,783	70,791	478,574	58,372	12.2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988.

라. 저축잔고

도시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저축잔고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의 저축, 유가증권의 보유, 契, 私債 및 전세금 등을 포함한 금융저축과 토지나 주택의 보유 등 실물저축을 예로서 들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저축잔고 가운데서 都市家計가 자신의 미래 소비수요의 충족을 위해 가지고 있는 저축잔고를 가려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本間正明 등(1985)과 表鶴吉(1985)은 미래 소비수요의 충족을 위한 저축잔고로서 전세금을 제외한 금융저축에 국한시키고 있는데, 우리도 이러한 예에 따르기로 한다. 전세금이나 자가주택의 보유기간중에 발생하는 귀속임료는 가계의 소득이 되는 동시에 소비지출이 된다(따라서 우리의 예산제약식의 兩邊에 같은 크기로 들어가서 아무런 변화를 줄 수 없다). 그러나, 자신의 미래소비 수요의 충족을 위해 전세금이나 자가주택의 처분을 고려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점을 생각할 때, 전세금이나 실물저축을 개인의 미래소비 수요충족을 위한 저축잔고의 통계에서 제외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표 2-5>는 도시근로자 가구의 다양한 형태의 저축잔고를 추정한 것이다. 전세금을 제외한 금융저축에 관하여는 국민은행의 1991년 『가계금융이용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補間法을 사용하여 『도시가계연보』상의 각 소득계층별 금융저축 잔고를 추정하였다. 전세금과 자가주택의 가액은 『도시가계연보』상의 전세평가액과 자가평가액 항목에 10.2%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전세평가액이나 자가평가액이란 인접 借家에 대한 지출 月貫를 참작하여 평가한 귀속임료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적정한 할인율로 나누면 전세금과 자가주택의 가액을 추정할 수 있다. 조재민(1991)에 의하면 1991년의 경우 전세금은 해당 부동산 시가의 50%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며, 보증금을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를 월세로 내는 경우에는 보통 보증금으로 전세

금의 15%를 납부하고 월세로는 전세 상당액과 납부한 보증금의 차액에 대하여 2% 정도를 매월 지급한다고 한다. 이를 年이자율로 계산해보면 10.2%가 나온다. $[1 \times 0.5 \times (1 - 0.15) \times 0.02 \times 12 = 0.102]$. 우리는 10.2%의 할인율을 사용하여 『도시가계연보』상의 전세평가액과 자가평가액의 항목으로부터 전세금과 자가주택 가액을 추정하였다. 도시근로자 가구가 타인에게 임대해 주고 있는 토지 및 주택의 가액도 추정해야 하는데, 이는 『도시가계연보』상의 임대료 항목에 위에서 계산한 10.2%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표 2-5〉 도시근로자 가구의 저축잔고

(단위 : 천원)

소득계층	150미만	~300	~450	~600	~750	~900	~1,050
금융저축	3,025.0	1,199.0	2,018.0	3,986.0	3,914.0	5,257.0	7,128.0
전세금	7,541.2	6,388.2	5,282.4	7,470.6	8,270.6	9,223.5	9,623.5
자가주택	5,176.5	5,541.2	7,070.6	6,035.3	7,611.8	9,894.1	11,870.6
임대부동산	223.5	600.0	564.7	541.2	600.0	952.9	1247.1
저축잔고총액	15,966.2	13,728.4	14,935.6	18,033.1	20,396.4	25,327.6	29,869.2

소득계층	~1,200	~1,350	~1,500	~1,650	~1,800	~1,950	~2,100	~2,100 이상
금융저축	8,116.0	8,943.0	9,888.0	11,181.0	12,622.0	11,864.0	15,008.0	28,328.0
전세금	8,988.2	8,894.1	8,423.5	7,764.7	8,258.8	7,988.2	8,164.7	7,552.9
자가주택	13,564.7	16,905.9	18,752.9	22,882.4	22,011.8	23,729.4	25,823.6	31,494.1
임대	1,717.6	2,117.6	2,529.4	2,682.4	3,270.6	4,282.4	4,117.6	10,976.5
저축총액	32,386.6	36,860.6	39,593.9	44,510.4	46,163.2	47,864.0	53,113.9	78,351.5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1991.

모든 형태의 저축잔고를 포함한 저축잔고 총액의 통계를 사용하여 가계의 효용함수를 추정하면 소비의 가중치(α_1^i)가 비현실적으로 작게 나오고 저축의 가중치(α_2^i)는 너무나 크게 나오는데, 이는 전세금이나 자가주택의 가액이 가계의 미래소비 수요충족의 재원이 될 수 없음을 나타내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마. 선호파라미터의 推計

이상의 각종 외생변수와 稅制파라미터의 推計值를 이용하여 효용함수의 選好파라미터를 추정한 결과가 <표 2-6>에 정리되어 있다. 효용함수의 選好파라미터를 추정함에 있어 저소득 두 계층의 경우 저축잔고와 저축플로우의 합($S^i + s^i$, $i = 1, 2$)이 마이너스가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소득계층의 저축잔고에 일정 常數(본고에서는 350만원)를 더하였는데, 이는 최저 소득계층의 경우 현재의 저축잔고 이상으로 차입(마이너스의 저축플로우)을 할 경우 일정 수준의 차입한도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2-6> 효용함수의 選好파라미터의 추정치

소득계층	150 미만	~300	~450	~600	~750	~900	~1050
대체탄력성(ε^i)	0.40763	0.37789	0.39010	0.40076	0.40068	0.40690	0.41348
소비의 가중치(α_1^i)	0.94394	0.77955	0.47677	0.25229	0.26579	0.25500	0.21039
저축의 가중치(α_2^i)	0.05406	0.22045	0.52323	0.74770	0.73421	0.74500	0.78961

소득계층	~1,200	~1,350	~1,500	~1,650	~1,800	~1,950	~2,100	2,100 이상
(ε^i)	0.41624	0.41859	0.42127	0.42243	0.42567	0.42442	0.42918	0.44267
(α_1^i)	0.21558	0.20414	0.19483	0.20334	0.18730	0.21647	0.15780	0.12283
(α_2^i)	0.78442	0.79586	0.80517	0.79666	0.81270	0.78353	0.84220	0.87717

<표 2-6>을 보면 우리나라의 노동의 대체탄력성(ϵ^l)이 대략 0.37에서 0.42까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미국에서 男性 世帶主의 노동 대체탄력성이 대략 0.408 정도로 추정되는 것(Ashenfelter and Heckman, 1973)과 유사하다. 高所得層의 대체탄력성이 저소득층의 그것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과 고소득층이 될수록 저축의 가중치가 증가되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일치하는 것이다.

3. 적정 소득·소비과세 비율의 시뮬레이션 결과

적정 조세체계의 문제와 관련하여 稅制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즉, ①현재의 稅收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사회후생(social welfare)을 극대화하는 稅制파라미터의 조합을 찾는 稅制變更의 差別的 效果分析의 방법과 ②稅收증대를 전제로 增稅에 따른 사회후생의 감소를 극소화하는 稅制파라미터의 조합을 찾는 均衡豫算 效果分析의 방법이 그것이다. 후자의 방법에 의한 분석도 가능하나 여기서는 전자의 방법, 즉 세제변경의 차별적 효과분석에 국한한다.

세제변경의 차별적 효과분석에 있어서 중심과제는 우리 사회의 규범적 가치관에 부응하는 최적의 소득·소비과세 비율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우리의 모형에서 사회의 규범적 가치관은 사회후생함수에서의 가중치(r)로 집약되어 있으므로, 결국 사회후생함수의 가중치 변화에 따른 최적 소득·소비과세의 비율을 찾는 문제가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시뮬레이션 절차를 생각할 수 있다.

(1단계) 소득세 면세점(a)을 단계적으로 인상시키는 것과 동시에 현재의 稅收를 유지하도록 하는 소비세율과 한계소득세율의 조합을 구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소득세 면세점 이하의 소득계층에 대하여는 0(零)의 한계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위에서 구하는 한계소득세율은 면세점 이상의 소득계층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소득세 면세점의 수준을 달리 설정함에 따라 0의 한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소득계층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本稿에서는 면세점을 年 300만원에서 150만원 간격으로 단계적으로 인상시키고, 소비세율은 0%에서 1%씩 단계적으로 인상시켜 가면서 현재의 세수수준을 유지하게 하는 한계소득세율을 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2단계) 稅收을 일정하게 하는 여러 가지의 稅制파라미터 조합 중에서 특정 사회후생함수(특정 r 에 대응하는 사회후생함수)를 최대로 하는 稅制파라미터의 조합을 구하고, 이에 대응되는 소득·소비과세의 비율을 구한다.

(3단계) 사회후생함수의 加重值(r)의 변화가 최적 소득·소비과세의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한다.

다음의 <표 2-7>은 $r = 1$ 일 때 시뮬레이션 결과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으며, <표 2-8>은 우리 시뮬레이션의 종합적인 결론으로서 사회후생함수의 가중치 변화에 따른 적정 稅制파라미터의 조합과 적정 소득·소비과세의 비율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2-9>를 보면 사회후생함수의 가중치(r)가 작아질수록, 다시 말해서 형평에 대한 고려가 커질수록 소득과세의 비중이 커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과세의 비중이 $r = 1$ 일 때는 23.2%, $r = 0.9$ 일 때는 50.1%, $r = 0.8$ 일 때는 71.8%가 각각 최적이며 r 이 0.7 이하일 때는 소비과세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이 最適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最適稅制파라미터의 조합을 보면 $r = 1$ 일 때는 소득세 면세점이 300만원이고 한계소득세율은 약 2.7%이며 소비세율은 11%인 세제가 최적인 것으로 나타나며, $r = 0.8$ 일 때 소득세 면세점은 여전히 300만원이고 한계소득세율은 약 8.5%이며 소비세율은 4%인 세제가 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2-7〉 사회후생함수의 가중치와 稅制파라미터
조합의 변화에 따른 후생변화

(단위 : 천원, %)

	면세점	소비세율	한계소득세율	사회후생수준
r = 1	3,000	0.00	0.119887740	22,527,337
		0.01	0.111038500	22,529,384
		.	.	.
		0.09	0.043171556	22,537,648
		0.10	0.035018092	22,537,815
		0.11	0.026931083	22,537,817*
		0.12	0.018908755	22,537,660
		0.13	0.010949415	22,537,353
	4,500	0.00	0.142227690	22,516,911
		0.01	0.131530230	22,520,320
		.	.	.
		0.12	0.022127084	22,536,907
		0.13	0.012795949	22,536,946
		0.14	0.003563025	22,536,794
	6,000	0.00	0.175450220	22,497,554
		0.01	0.161661880	22,503,857
		.	.	.
		0.14	0.004248117	22,536,641

〈표 2-8〉 最適稅制

(단위: 천원, %)

r	소득공제	소비세율	한계소득세율	소득과세 구성비
1.0	3,000	11.0	2.6931083	23.2
0.9	3,000	7.0	5.9685419	50.1
0.8	3,000	4.0	8.5004670	71.8
0.7	3,000	0.0	11.9887740	100.0
0.6	3,000	0.0	11.9887740	100.0
0.5	3,000	0.0	11.9887740	100.0
0.4	3,000	0.0	11.9887740	100.0
0.3	3,000	0.0	11.9887740	100.0
0.2	4,500	0.0	14.2227690	100.0
0.1	4,500	0.0	14.2227690	100.0
-0.1	4,500	0.0	14.2227690	100.0
-0.2	4,500	0.0	14.2227690	100.0
-0.3	4,500	0.0	14.2227690	100.0
-0.4	4,500	0.0	14.2227690	100.0
-0.5	4,500	0.0	14.2227690	100.0
-0.6	4,500	0.0	14.2227690	100.0
-0.7	4,500	0.0	14.2227690	100.0
-0.8	4,500	0.0	14.2227690	100.0
-0.9	4,500	0.0	14.2227690	100.0
-1.0	4,500	0.0	14.2227690	100.0

그러나 r의 값이 0.7 이하일 때는 소비세율이 0(零)인 것이 최적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r의 값이 0.7 이하이고 0.3 이상일 때는 소득세의 면세점을 300만원으로 낮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r의 값이 낮아

질수록 소득세의 면세점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우리의 연구결과는 몇 가지 특이한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우리의 연구결과를 日本稅制에 대한 本間正明 등(1985)의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발견되는 사실이다. 本間正明 등의 연구에서 日本稅制은 $r=1$ 일 때 한계소득세율은 1%이며 소비세율은 12%, $r=0.2$ 일 때 한계소득세율은 5%이며 소비세율은 6%, 그리고 $r=-1$ 일 때 한계소득세율은 33%이며 소비세율은 0%인 세제가 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세제에 대한 우리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가계의 選好體系가 일본보다 오히려 소득과세 위주로 세제를 개편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사실이다. 사회적 형평에 대해 동일한 고려를 하였을 때, 예를 들면 $r=0.2$ 의 수준에서 보면 일본의 가계는 대략 소득과세와 소비과세의 비중이 같은 세제를 선호하나, 우리나라의 가계는 100% 소득과세로 세수가 조달되는 세제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우리나라의 가계가 소득세 위주의 稅制改編을 선호하고 있는데 반하여 현행 우리나라의 세제는 거의 사회적 형평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아니하는 세제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개인소득과세 비중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약 34%인데, 이는 사회적 형평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아니하는 경우인 $r=1$ 일 때의 적정 개인소득과세 비중인 23.2%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고, 사회적 형평을 아주 미미하게나마 고려하는 경우인 $r=0.9$ 일 때의 적정 개인소득과세 비중인 50.1%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셋째로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 면세점(4人家族 근로소득자의 경우 인적공제와 근로소득공제만 고려해도 年 512만 9천원 수준)이 너무 높다는 점이다. 현재와 같이 소득과세의 비중을 30% 내외로 유지할 경우에는 물론이고 소득과세의 비중을 상당수준(70 ~ 80% 수준)까지 높일 경우에도 소득세의 면세점은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것이 우리 연구의 결론이다. 현재의 소득공제 수준은 사회적 형평에 대한 고려가 아주 클 때(r 의 값이 -1 보다도 더 작을 때)에나 정당화되는 수준이다. 사회적 형평에 대한 고려가 클 때는 소득세 면세점을 높게 하고 한계소득세율도 높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우리나라의 소득세 면세점 수준만을 보면 우리나라가 사회적 형평에 대한 고려를 아주 강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나, 한계소득세율(현재 약 5.1% 수준)을 보면 사회적 형평에 대한 고려를 거의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사실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세계개편과 관련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우리나라 국민의 선호체계가 일본인에 비하여 소득세 위주의 세제를 선호하고 있으며, 향후 사회적 형평에 대한 고려를 조금이라도 더하는 경우 소득과세의 비중을 크게 提高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소득과세의 비중을 높일 경우 한계소득세율의 인상보다는 소득세 면세점의 인가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本稿에서의 소득세 면세점이 내포하는 바는 각종 인적공제나 근로소득공제 등은 물론이고 각종 소득세 비과세·감면 등을 포함한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한계소득세율 5.1%는 사회적 형평을 아주 미미하게 고려하는 수준($r = 0.9$ 정도의 수준)이다. 그러나, 인적공제와 근로소득공제만을 감안할 경우의 소득세 면세점 年 512만 9천원, 그리고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와 각종 소득세 비과세·감면까지 고려하여 우리가 추정한 소득세 면세점 年 843만 8,600원은 사회적 형평을 너무나 과도하게 고려하는 수준($r = -1$ 이하의 수준)이다. <표 2-8>을 보면 소득세 면세점이 450만원이었을 때 한계소득세율은 14.2% 정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현재의 우리나라 소득세 면세점과 조화되는 한계소득세율은 현재의 한계소득세율의 3배를 크게 초과하는 수준이다.

현재의 한계소득세율 수준에서는 물론이고, 향후 사회적 형평에 대한 고려가 강하게 반영되어 한계소득세율을 3 ~ 4배 정도로 인상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면세점은 대폭 인하되어야 한다. 소득세 인적공제나 근로소득공제 등의 인하가 이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면, 향후 적어도 이들 각종 소득공제의 인상은 억제하여야 하며, 각종 소득세 비과세·감면 등은 대폭 축소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세제를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소득세 면세점 수준이 너무 높다는 사실은 근로소득 과세자 비율의 국제비교나 소득세 면세점 수준의 국제비교에서도 나타난다.

〈표 2-9〉 근로소득 과세자 비율

(단위: %)

한국(1992)	일본(1990)	미국(1987)	영국(1987)
46.0	84.0	82.9	93.6

자료: 재무부 세제실.

〈표 2-10〉 근로자 가구 면세점의 GNP 대비 비율

(단위: %)

한국(1991)	일본(1991)	미국(1992)	영국(1990)
26.8 (44.2) ¹⁾	26.2	21.3	17.1

주: 1) 우리나라의 근로자 가구 면세점의 GNP 대비 비율은 인적공제와 근로소득공제만을 고려하였을 때는 26.8% 수준이나, 의료비·보험료·교육비 공제 등과 각종 소득세 비과세·감면 등을 고려하면 44.2% 수준임.

자료: 재무부 세제실.

셋째는 현재의 세수를 유지하는 선에서 세제를 개편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상과 같이 소득과세의 비중을 높일 경우 소비과세의 비중은 대폭 인하되어야 하나, 현재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 재정수요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현실을 감안하여 增稅를 전제로 세제를 개편한다면 소비과세 비중의 대폭 인하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소득과세 비중의 증대와 소비과세 비중의 감소가 사회후생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을 감안하여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의 세율조정은 곤란하다 하더라도 개별소비세인 특별소비세 세율의 부분적 인하 내지 과세대상의 縮小調整은 增稅를 전제로 세제개편을 하는 경우에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부표 2-1> 1991년 도시가구의 가계수지 관련 재산세세 납부액 계산

(단위 : 10억원, %)

- 재산세
 - 市地域 주거시설 관련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액 : 136.0 (A)
 - 재산세 평균 징수율 : 징수액 275.5/부과액 279.6 (B)
 - 시지역 주거시설 관련 건축물분 재산세 징수액 : $A \times B = 134.0$
- 종합토지세
 - 종합토지세의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課標와 세액간에 획일적인 관계를 설정하기 어려움
 - 주거용 토지의 課標 및 세액의 분포가 모든 용도의 토지의 課標 및 세액의 분포와 유사하다고 가정
 - 市地域 주거용 土地分 종합토지세 부과액 계산 : 144.7 (C)

모든 용도의 토지

	課標(A)	세액(B)	B/A
全國(C)	135,232	531.4	0.39
市(D)	101,595	458.9	0.45
D/C	75.1	86.3	

주거용 토지

	課標(E)	세액(F)	F/E
全國(G)	42,632	(167.5)	0.39
市(H)	(32,029)	(144.7)	0.45
H/G	75.1	86.3	

주 : () 안의 수치는 해당 통계가 없어 추정된 것임.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1992.

〈부표 2-1〉의 계속

- 종합토지세 평균 징수율 : 징수액 518.2 / 부과액 531.4 (D)
- 시지역 주거용 토지분 종합토지세 징수액 : $C \times D = 141.1$

- 도시계획세

(건축물분 부과액)

- 시지역 건축물분 도시계획세 부과액(E) : 123.8
- 시지역 주거용 건축물의 비율(F) : (시지역 주거용 건축물 재산세 課標 31,921) ÷ (시지역 모든 용도의 건축물 재산세 課標 61,414)

- 시지역 주거용 건축물분 도시계획세 부과액(G) : $E \times F = 64.3$

(土地分 부과액)

- 시지역 토지분 도시계획세 부과액(H) : 173.7
- 시지역 주거용 토지의 비율(I) : (시지역 주거용 토지 종토세 課標 32,029) ÷ (시지역 모든 용도의 토지 종토세 課標 101,596)
- 시지역 주거용 건축물분 도시계획세 부과액(J) : $H \times I = 54.8$

(도시계획세 징수액)

- 市地域 주거용 건물 및 토지관련 도시계획세 부과액(K) :

$$G + J = 119.1$$

- 도시계획세 평균 징수율(L) : 징수액 307.3 / 부과액 313.0

- 시지역 주거용 건물 및 토지관련 도시계획세 징수액 :

$$K \times L = 115.4$$

- 공동시설세

- 시지역 건축물분 공동시설세 부과액(M) : 94.4
- 시지역 주거용 건축물분 공동시설세 부과액(N) : $M \times F = 49.1$
- 공동시설세 평균 징수율(P) : 징수액 105.5 / 부과액 106.6
- 시지역 주거용 건축물분 공동시설세 징수액 : $N \times P = 48.6$

III. 이론적 접근방법 : 소득과세 對 재산과세 (토지보유과세) 비율의 적정화

前章에서 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여러 이론적 문헌에서 적정 조세구조와 관련하여 직·간세 비율 및 소득과세와 상품과세(소비과세)간의 비율에 대하여는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직접세내에 있어서 소득과세와 재산과세간의 비율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필자가 아는 한, 학계에서 별 논의가 없었는 듯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 및 세율체계의 개편과 관련하여 종합토지세의 실효세율을 어느 수준으로 설정하여야 적정 한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필자에 따라서는 종합토지세의 실효세율을 0.2%(李性旭·韓相國, 1993), 혹은 1%(金泰東·李根植, 1989) 등의 수준에서 설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실효세율 수준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章에서는 재산과세의 주된 기능이 소득과세의 보완기능이라는 데 착안하여 현행 소득세제가 분배에 관한 우리 사회의 가치판단을 理想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 보고, 이러한 현행 소득세제가 지향하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재산과세는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하며 그 세수비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제1절에서는 재산과세의 근거와 경제적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재산과세의 역할이 어떠한 방향에서 설정되어야 하는지를 분석한다. 이어서 제2절에서는 제1절에서 살펴본 재산과세의 역할에 비추어 현행 토지보유과세를 중심으로 재산과세의 기능을 평가해 보고, 마지막으로 제3절에서는 현행 소득과세의 비중에 비추어 본 재산과세, 특히 토지보유과세의 적정 비중을 모색해 본다. 재산과세의 과세대상에는 토지·건물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本章에서는 과세대상을 토지에 국한하여 재산과세의 적정 비중을 계산해

보기로 하며, 그 과정에서 종합토지세의 실효세율을 어느 수준에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분석해 보기로 한다.

1. 재산과세의 근거와 경제적 효과

가. 재산과세의 근거

1) 應益課稅

재산과세는 재산소유자가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에 대한 代價라는 것이다. 국가의 기본 기능 중의 하나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며, 따라서 재산소유자는 그러한 국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다. 더구나 국가가 도로나 상·하수도 시설을 확충함에 따라 인근의 재산가치가 증가되기도 하므로 재산과세의 근거로서 應益課稅가 타당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반드시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더 많이 수혜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공공서비스의 혜택이 재산의 가치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하여 배분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교육의 혜택은 자녀의 수가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수혜를 받게 되며, 소방서비스의 혜택은 특정인이 보험에 든 가액의 크기와 반비례한다. 만약 용익과세만을 목표로 한다면, 使用者 負擔金이 재산과세보다 더 적절한 재원조달 방법이 될 것이다.

2) 應能課稅

재산세의 세원은 재산에 의하여 보증되는 소득이며, 재산소유에 수반되는 擔稅力은 다름아닌 당해 재산의 所得稼得能力이기에 이러한 所得稼得能力에 상응하는 재산세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본수익률이 10%일 때 1억원의 가치를 갖는 재산에서 얻는 소득은 1천만원이며, 이 재산에 대한 1%의 과세는 그 소득에 대한 10%의 과세와 동일하

다. 따라서 일정한 資産에 대한 재산세율(t_p)이 그 자산이 稼得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율(t_y)과 동일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t_p = t_y \times i$ (단, i 는 이자율)라는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토지·건물 등 실물자산에 대한 재산과세의 세율을 현재 20%인 이자·배당 등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소득세율과 형평을 맞추려면 2%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이 실제로 임대되어 자본수익률에 상응하는 임대소득을 올리며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내고 있다면, 종합소득세에 추가하여 재산세를 이중으로 내야 하는 이유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소득수준을 포함하여 다른 조건이 모두 똑같다면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의 담세력이 더 크고, 따라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재산은 그 所得稼得能力 이상의 경제적 효용을 주는데 재산소유는 사회적 신분이나 위세를 높여줄 뿐 아니라 당해자산을 처분하여 소비에 충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 재산의 축적과정에서 소득세를 모두 냈고 소유재산의 운용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도 모두 내고 있다면 굳이 추가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 저축을 하지 않는 근로소득자와 저축을 하는 근로소득자를 상정할 때, 저축의 기회는 前者에게도 허용되어 있는 것이며 굳이 後者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車軒權, 1986). 재산 그 자체가 담세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을 純資産에 국한시키는 것이 진정한 담세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채를 공제하지 아니하며 과세대상도 주로 부동산에 국한되어 있는 현행 재산과세는 이러한 점에서 응능과세의 원칙에도 완전히 부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재산(보유)과세의 경제적 효과(토지를 중심으로)

1) 수익률에 대한 영향

Feldstein(1977)은 지대에 대한 소득과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그의 모형을 이용하여 토지가격에 부과되는 토지보유과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토지의 양이 T 로 고정되어 있고, 노동공급도 각 세대에 있어서 L 로 고정되어 있으며, 한 종류의 상품(X)이 토지, 노동, 그리고 자본(K)을 사용하여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인 다음의 생산함수에 의해 생산된다고 하자.

$$X = F(K, L, T) \dots\dots\dots (3.1)$$

노동과 토지의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 균형은 자본의 가치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을 때 성립된다.

각 노동자는 青年期와 老年期 두 기간 동안만 생존하는데, 청년기에는 노동을 하여 $W = F_L$ 상당의 임금을 벌어서 일부를 저축하고 나머지는 소비에 충당한다고 하자. 저축률 σ 는 이자율 F_K 에 의존한다.

$$\sigma = S(F_K) \dots\dots\dots (3.2)$$

저축은 자산의 구입에 사용되는데, 同 資産은 각 노동자가 老人이 되었을 때 그 당시의 청년들에게 매각하여 자신의 老年期の 소비에 충당한다.

저축의 총량은 그 저축으로 구입되는 자산가치의 총계와 같아야 한다. 이 모형에서는 한 종류의 상품만 생산되어 소비재와 자본재의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소비재와 자본재의 가격이 같으며 이것을 numeraire로 사용한다. 토지의 가격은 p 로 표시된다. 따라서 저축

의 균형조건은 다음과 같다.

$$oWL = K + pT \dots\dots\dots(3.3)$$

토지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토지보유과세가 부과되면 토지의 수익률은 $(F_T - tp) / p$ 가 되고, 자산시장의 균형은 이러한 토지의 수익률과 자본의 수익률(F_K)이 일치하는 점에서 성립된다. 즉,

$$F_K = (F_T - tp) / p \text{ (단, } t \text{는 토지세 세율)} \dots\dots\dots(3.4)$$

따라서 토지가격은 $p = F_T / (F_K + t)$ 가 된다.

먼저 자본의 양(K)이 변화하지 않는 短期에 있어서 토지세의 부과 토지의 가격과 수익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본다. 단기에 있어서는 K 가 고정되어 있고 T 와 L 도 假定에 의해 고정되어 있는 관계로 F_K 와 F_T 가 토지세의 부과를 전후하여 변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토지세가 부과된 후의 토지가격인 $F_T / (F_K + t)$ 는 토지세가 부과되기 전의 토지가격인 F_T / F_K 에 비해 토지세의 현재가치만큼 토지가격이 하락한 수준이다. 단기적으로는 토지세의 부과여부가 자본의 수익률(F_K)에 변화를 줄 수 없고, 자산시장의 균형조건에 의해 토지의 수익률은 자본의 수익률과 일치하여야 하므로 토지의 수익률도 토지세의 賦課與否와 관계 없이 F_K 에 고정되어 있다. 이는 토지세가 단기적으로는 자본화 효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을 토지세의 현재가치만큼 하락시켜서 토지세 부과결정 당시의 토지소유자에게 모두 轉嫁되며 토지의 수익률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의견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K 가 변화하는 長期에 있어서는 토지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가 단기에 있어서와는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식 (3.4)를 식 (3.3)에 대입하면 다음의 식을 얻을 수 있다.

$$\sigma W L = K + [F_T / (F_K + t)] \cdot T \dots\dots\dots (3.5)$$

$W = F_L$ 과 $\sigma = S(F_K)$ 를 이용하면

$$S(F_K) \cdot F_L L - [F_T / (F_K + t)] \cdot T - K = 0 \dots\dots\dots (3.6)$$

이 된다. 총저축에서 총토지가격을 차감한 것이 자본재에 대한 수요를 나타내는데,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D = S(F_K) \cdot F_L L - [F_T / (F_K + t)] \cdot T \dots\dots\dots (3.7)$$

이 된다. 식 (3.6)은 자본재에 대한 초과수요가 균형에서는 0이어야 함을 나타내며, 安定化 條件(stability condition)은 K 에 관한 이 초과수요함수[식 (3.6)의 1차 도함수가 0보다 작아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 (즉, $\partial D / \partial K < 1$). 식 (3.6)을 전미분하면,

$$(\partial D / \partial K - 1)dK + [F_T / (F_K + t)^2]dt = 0 \dots\dots\dots (3.8)$$

혹은,

$$dK/dt = - [F_T / (F_K + t)^2] / [(\partial D / \partial K - 1)] \dots\dots\dots (3.9)$$

가 된다. 안정화 조건($\partial D / \partial K < 1$)은 식 (4.9)의 부호가 陽임을 내포한다. 토지세를 부과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자본의 양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은퇴하여 근로소득이 없는 노년기의 소비에 충당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자산(토지, 혹은 자본재)을 축적하고자 하며, 토지세

의 부과는 토지가치를 하락시키기 때문에 줄어든 토지자산에 대체하여 자본재를 더 많이 축적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본의 양이 증가하게 되면 이자율(F_K)은 떨어지고 토지의 생산성(F_T)은 증가하게 된다. 토지세 부담의 일부는 낮아진 이자율의 형태로 토지로부터 자본재로 전가된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토지세의 부과가 세후 지대소득($F_T - tp$)이나 토지의 가격을 반드시 떨어지게 하는 것은 아니다. Feldstein(1977)은 토지와 자본재간의 대체탄력성이 매우 낮을 때 토지세의 부과가 오히려 세후 지대소득이나 토지의 가격을 높일 수도 있음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2) 개발시기에 대한 영향

토지세는 轉嫁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토지세가 부과되면 현재의 토지 소유자는 토지세라는 형태로 토지의 保有費用을 부담해야 한다. 토지세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현재의 토지를 더 집약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토지세의 보유비용효과(holding cost effect)가 실제로 나타나는 정도는 비경제적인 이유(예; 토지에 대한 정서적인 애착)로 보유되는 토지가 얼마나 많이 존재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러한 토지세의 보유비용효과는 토지세의 부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감이 토지에 대한 정서적인 애착 때문에 토지를 보유함으로써 얻는 만족감보다 클 때 나타난다. 이와 같이 土地市場에 경제적인 비능률이 존재할 경우, 토지세는 이러한 비능률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토지세의 보유비용효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는데, Bentick(1979)이 이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토지소유자는 자기 소유의 토지를 지금 당장에 개발하는 것보다 미래에 개발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개발을 연기하는 수도 있다. 이는 미래에 개발하여 얻는 소득 흐름의 현재가치가 그 토지를 지금 당장에 개발하여

얻는 소득 흐름의 현재가치보다 크기 때문이다. Bentick(1979)은 토지세가 부과되면 지금 당장에 개발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미래에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유리하게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Bentick의 결론은 토지세가 자원배분에 중립적이지 않으며 토지의 비능률적인 사용을 조장하여 토지시장을 왜곡시킬 수도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Tideman(1982)은 Bentick의 결론이 토지세의 과세표준인 토지가격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인함을 밝혔다. Bentick은 토지세의 과세표준인 토지의 가격이 그 토지의 이용계획, 궁극적으로는 각 이용계획이 내포하는 소득흐름의 현재가치(그의 예에서 $\$1/r$ 혹은 $\$e^{-T}c/r$)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토지의 가격은 그 토지의 이용계획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이용계획이 내포하는 소득흐름의 현재가치(그의 예에서 $\$1/r$ 과 $\$e^{-T}c/r$ 가운데서 큰 것)와 일치하는 것이다. 토지세의 과세표준인 토지의 가격은 그 토지의 이용계획과는 무관하고 따라서 토지세는 개발의 시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토지세는 개발시기와 관련하여 어떠한 추가적인 비능률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토지시장의 비능률을 是正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과 토지세의 귀착

식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지세는 장기적으로 자본의 축적을 촉진하여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토지세가 부과되면 자본화 효과로 인하여 토지가격이 하락하는 반면, 자본이 축적되고 자본집약도가 높아져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 즉 실질임금이 상승하게 되는 두 가지의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토지세의 귀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토지세는 老年의 地主階層으로부터 그 이후의 靑年階層으로 所得 내지 富를 재분배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재분배가 저축을 증가시켜 자본의 축적을 촉진하게 하는 것이다.

토지세 부과 당시의 노년계층은 토지세의 부과로 항상 손해를 보게 되는데, 장기적으로 토지의 가격은 토지세 흐름의 현재가치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덜 떨어질 수도 있다(Chamley and Wright, 1986). 토지세 부과 당시의 청년계층도 토지세 부담의 일부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토지세 부과로 인한 자본축적의 효과가 그들이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이후부터 나타나기 때문이다. 토지세 부과당시에는 자본의 양이 증가되기 전이어서 勞動生産性은 아직 상승되지 아니한 수준이다. 따라서 토지세 부과 당시의 청년계층의 임금은 예전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그들이 노년이 되었을 때는 자본축적이 진전되어 그들이 한 저축의 수익률이 낮아져 있기 때문이다. 토지세 부과 당시 청년 이후의 계층은 항상 이익을 보게 된다. 자본축적이 진전됨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높아지고 실질임금이 상승되기 때문이다.

2. 재산과세(토지보유과세)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한 논의

이상에서 우리는 재산과세의 근거와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재산과세의 부담을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의 정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應益課稅)은 재산별로 받는 혜택의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이 재산의 양에 따라 결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재산과세의 부담을 재산의 소득가득능력에 따라 부담시키는 것(應能課稅)은 자산소득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굳이 그러한 자산소득에 추가적인 세부담을 부과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기준 역시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재산과세의 경제적 효과를 보면, 토지세는 토지의 수익률

에, 특히 단기의 경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토지에 대한 투기란 토지의 수익성이 여타자산의 수익성보다 큰 데 기 인하는데, 토지세가 토지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투 기억제의 정책수단으로 토지세를 이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말이 된다. 토지가격은 토지의 한계생산성과 이자율(자본의 수익률) 및 토지 세율에 의해 결정되는데, 경제성장과 더불어 자본이 축적되면 토지의 한계생산성은 오르고 이자율은 떨어져서 토지의 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다.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가격상승의 기대가 지나쳐서 투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토지세가 이러한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토지세는 다만 자본화 효과를 통하여 일시적으로 토지가격 수준에 영향을 줄 뿐이다. 토지세는 비경제적인 이유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개발을 촉진하지만 토지의 개발시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난다. 또한 토지세의 부과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지만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토지세를 어떠한 경제 정책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비능률적이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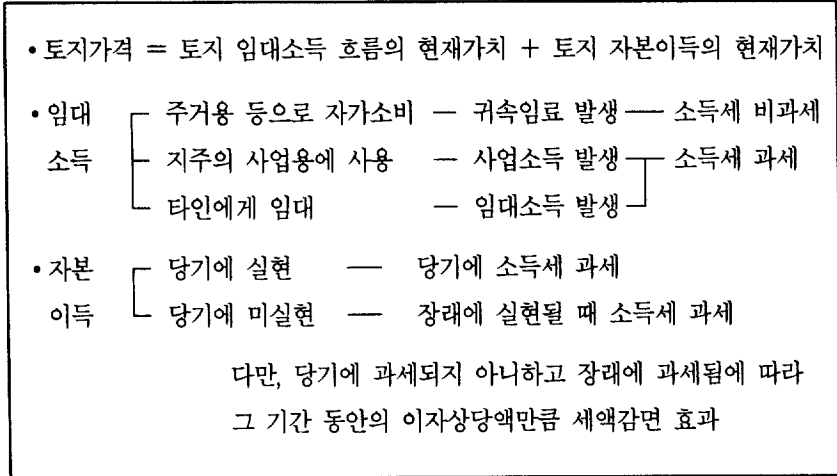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세의 과세근거를 應益課稅나 應能課稅에 서 찾기도 어렵고, 토지세를 어떠한 경제정책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 기 도 어렵다면, 토지세의 과세근거는 이와는 다른 관점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소득재분배에 관한 우리 사회의 가치판단을 이상 적으로 반영한 것이 소득세제라 할 것이다. 현행 소득세제는 包括的 所得稅(comprehensive income tax)를 理想으로 하고 있으나, 사실에 있어서는 소득추정의 어려움으로 상당부분의 소득이 과세범위에서 제 외되고 있다. 따라서 재산과세는 1차적으로 이와 같이 소득세의 과세 범위에서 제외된 소득을 간접적으로 과세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만 재산세가 소득세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보완세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재산보유 그 자체에서 얻는 효용(사회적 신분과 위세의 상승)이 있기 때문에 재산소유의 크기가 담세력을 나타내고, 부의 분배가 소득의 분배보다 더 불균등하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산과세의 2차적인 필요성이 있게 된다. 이러한 고려는 순전히 주관적인 가치판단으로 경제학의 실증분석의 범위를 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고려까지 감안한다면 재산과세의 세율은 소득세의 1차적인 보완세 역할만을 고려했을 때보다 더 높아지게 된다. 本稿는 재산과세의 주된 기능이 소득과세의 보완기능이라는 데 착안하여 현행 소득세제가 분배에 관한 우리 사회의 가치판단을 이상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 보고, 이러한 현행 소득세제가 지향하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재산과세는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하며, 그 稅收比重이 어떠한지 분석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토지보유과세의 근거를 다음 [그림 3-1]을 참조하면서 살펴보자. 토지의 가격은 통상 당해 토지의 보유기간중에 발생하는 임대소득 흐름의 현재가치와 당해 토지를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자본이득의 현재가치의 합과 같다. 따라서 만약 이상적인 포괄적 소득과세가 시행되어 모든 임대소득과 양도소득을 철저히 포착하여 정책적인 비과세·감면을 제외하고 과세한다면 토지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과세의 補完稅로서 토지보유과세를 부과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소득 측정의 어려움이란 문제 때문에 상당부분의 소득이 과세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다.

먼저 토지의 보유기간중에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하여 살펴보자. 특정 토지의 보유기간중에 지주는 당해 토지를 본인의 주거용에 사용하든지 본인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賃貸할 것이다. 본인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이 부분은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의 형태로 소득이 발생되고 따라서 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자신의 주거용에 사용하는 경우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임대소득, 즉 歸

[그림 3-1] 토지가격과 토지관련소득



屬賃料(imputed rent)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자본이득에 대하여 살펴보자. 通常 실제의 소득세제는 이상적인 포괄적 소득세와 달리 미실현 자본이득(unrealized capital gain)을 과세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우리나라와 같이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土地超過利得稅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 이 주장은 부분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토지초과이익세는 당해 토지의 지가상승률이 전국평균을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전국평균을 초과하는 부분의 미실현 자본이득을 과세한다. 따라서 지가상승률이 전국평균을 미달하는 경우나 전국평균을 이상일 경우에도 전국평균에 해당되는 미실현 地價上昇分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미실현 자본이득을 과세하지 못하는 현행 소득세의 문제는 잔존한다. 그러나 당해 토지가 비록 당기에 매매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매매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매매시점에 당시까지 형성된 모든 자본이득이 과세되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비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단지 해결되어야 할 사항은 課稅移延(tax deferral)의

문제뿐이다. 즉, 당기에 형성된 자본이득이 당기에 실현되지 않으므로 과세가 미래의 매매시점까지 연기됨에 따라 그 기간 동안의 이자상당액만큼 세액이 감면되는 효과가 있게 된다(이러한 이유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소위 동결효과(lock-in effect)를 갖게 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행 소득세제는 귀속임료에 대해 과세하지 못할 뿐 아니라, 당기에 실현되지 아니한 자본이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장래의 실현시점에 이연하여 납부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이자상당액만큼 현재의 자본이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효과를 갖고 있다. 이러한 현행 소득세의 미비점을 토지가격에 대해 과세하는 토지보유과세를 통하여 어느 정도 시정할 방안을 모색하여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득종류간 세부담의 형평이 확보될 것이다.

물론 귀속임료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가 야기하는 자가주택 거주자와 임대주택 거주자간의 세부담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재산세를 과세하는 방안 이외에도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①자가주택 거주자의 귀속임료를 추정하여 소득세를 직접 과세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②자가주택 거주자의 귀속임료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유지하면서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하여 주택 임대료를 소득공제해주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①의 경우 귀속임료 추정이라는 행정기술상의 어려움이 있고, ②의 경우 자가주택 거주자와 임대주택 거주자간의 세부담 불균형은 해결되지만, 고소득자들일수록 좋은 주택에 거주하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새로운 형태의 세부담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장래의 실현시점으로 이연됨에 따라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소득세가 사실상 每期에 이자상당액만큼 세액이 감면되는 문제에 대하여서도 재산세 부과 이외의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金明淑(1989)은 조세이연의 기간에 따라 이자를 부과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每期에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조세(re-

current taxes)인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조세이연의 기간에 따라 이자를 부과하는 방안과 동일한 효과를 갖고 있다.

3. 재산과세(토지보유과세) 비중의 설정

이하에서는 현행 소득과세가 귀속임료에 대한 비과세와 자본이득에 대한 조세이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단점을 재산과세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면서, 현행 토지보유과세가 소득과세의 보완세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 비중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계산해 보고자 한다.

먼저 귀속임료를 계산하려면 지주가 소유하는 토지 가운데 주거용 등으로 자가소비되는 토지의 비중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1990년의 종합토지세 과세상황에 관한 통계를 살펴보면 <표 3-1>과 같다.

1990년 綜合土地稅 課稅標準 총계는 107조 7,510억원으로 나타나고, 이상의 다양한 토지용도 가운데서 어느 부분이 자가소비용이고 어느 부분이 임대나 사업에 이용되는 영업용인지 구별하기가 용이한 것은 아니다. 우선 별도합산대상 토지와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 농지, 목장, 임야, 골프장 등은 모두 사업에 이용되는 토지로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 종합합산대상 주거용 토지와 분리과세대상 주거용 토지, 그리고 별장용 토지 등은 임대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자가소비용으로 볼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종합합산대상 토지 가운데 주거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이다. 이들은 주로 투기 등을 목적으로 영업에 필요한 이상으로 과다하게 보유되는 토지로서 영업용에 충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고 하여 당해 토지의 보유기간중에 地主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주의 자가소비에 충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토지를 여기서는 유희토지라 부르기로 한다.

<표 3-1> 1990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총계:107조 7,510억원)

(단위: 10억원)

종 합 합 산	별 도 합 산	분 리 과 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면적 이내 주거용 토지 35,290 ◦ 기준면적 초과 공장용지 1,971 ◦ 부재지주 농지 4,434 ◦ 기준면적 초과 목장용지 67 ◦ 종합합산 임야 4,929 ◦ 기준면적 초과 영업용지 358 ◦ 나대지 8,738 ◦ 잡종지 684 ◦ 기 타 6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면적 이내 영업용지 19,5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면적 이내 공장용지 6,919 ◦ 분리과세 농지 20,499 ◦ 분리과세 목장 125 ◦ 분리과세 임야 1,512 ◦ 골프장 용지 162 ◦ 별장용 토지 14 ◦ 기준면적 초과 주거용 토지 141 ◦ 기 타 1,684
<p>소 계 57,106</p>	<p>소 계 19,588</p>	<p>소 계 31,056</p>

자료 : 내무부, 『지방세 연감』, 1991.

주거용 토지 가운데서 자가소비에 충당되는 부분과 임대용에 충당되는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 주택보급률과 주택소유형태에 관한 통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표 3-2>와 <표 3-3>을 보면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대략 70%이며, 자가소유 비율이 약 50%임이 나타난다. 따라서 따라서 주택의 數를 기준으로 볼 때 自家 對 他家의 비율은 대략 5 대 2 정도로 보이며, 주거용 토지의 價額을 기준으로 할 때도 자가주거용 토지와 임대주택용 토지의 비율이 동일한 비율로 유지된다고 가정한다. 물론 자가주거용 주택이 임대용 주택보다 넓고 가격도 비싼 것일 경우

가 많으므로 주택의 數를 기준으로 한 비율이 주거용 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 비율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통계가 없는 관계로 이러한 가정을 하게 된 것이다.

<표 3-2> 주택보급률 추이

	1980	1985	1990
가구(천가구)	7,470	8,751	10,277
주택(천호)	5,319	6,104	7,347
주택보급률(%)	71.2	69.8	71.8

자료 : 건설부, 『건설통계편람』, 1991.

<표 3-3> 소유형태별 주택수

(단위: 천가구, %)

		1980	1985	1990
전	국	7,969	9,571	11,357
	자	4,672 (58.6)	5,127 (53.6)	5,757 (50.7)
	타	3,297 (41.4)	4,443 (46.4)	5,600 (49.3)
시	부	4,670	6,331	8,466
	자	2,007 (43.3)	2,617 (41.3)	3,528 (41.7)
	타	2,663 (57.0)	3,714 (58.7)	4,938 (58.4)
군	부	3,299	3,241	2,891
	자	2,665 (80.7)	2,510 (77.5)	2,229 (77.1)
	타	635 (19.3)	731 (22.5)	662 (22.9)

주 : () 안은 구성비를 나타냄.

자료 : 건설부, 『건설통계편람』, 1991.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여 보면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전국의 토지를 자가소비용과 영업용으로 구분하면 <표 3-4>와 같다. <표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課稅標準을 기준으로 국토의 24.0%가 地主의 주거용으로 자가소비에 충당되고, 56.2%가 地主 자신의 사업에 이용되거나 타인에게 임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머지는 거의 자가소비에 충당되지도, 영업에 이용되지도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4> 자가소비용 토지와 영업용 토지의 구분

(단위: 10억원, %)

	자가소비용 토지	영업용 토지	유휴 토지
종합합산 대상토지	◦ 기준면적 이내 주거용 토지 × 5/7 25,207	◦ 기준면적 이내 주거용 토지 × 2/7 10,083	◦ 주거용 토지의 종합합산 토지 21,286
별도합산 대상토지		◦ 기준면적 이내 영업용지 19,588	
분리과세 대상토지	◦ 별장용토지 14 ◦ 기준면적 초과 주거용 토지 141	◦ 별장용 토지 와 기준면적 초과 주거용 토지를 제외 한 분리과세 대상토지 30,902	
소 계	25,891 (24.0)	60,573 (56.2)	21,286 (19.8)

주: () 안은 구성비를 나타냄.

이상에서 본 자가소비에 충당되는 토지에 대한 귀속임료와 同 歸屬賃料에 종합소득세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를 계산해 보자. 귀속임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을 알아야 한다. 1990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의 총계는 107조 7,510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공시지가와 대비한 1990년 과표현실화 비율이 15.3%인 점을 고려한다면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가액의 총계는 704조 2,550억원이 된다. 이 가운데서 자가소비에 충당되는 토지의 가액은 전체의 24.0%에 해당하는 169조 210억원이 되고, 토지의 수익률을 연 3%로 잡으면 귀속임료는 대략 5조 710억원이 된다[1990년 부동산 수익률에 관하여는 조재민(1991, p.65 참조)]. 여기에 종합소득세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합소득세의 실효 한계세율을 계산해야 한다. 1990년 도시가계연보 자료를 Tobit 모형에 대입하여 1990년 종합소득세의 실효한계세율을 구해보면 6%로 나타난다(Tobit 모형에 의한 종합소득세 실효세율 계산 방법은 제2장을 참조하기 바람). 실효 평균세율이 아니라 실효 한계세율을 계산한 것은 토지보유자가 대부분 소득세 면세점 이상의 소득자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총 귀속임료 5조 710억원에 6%의 實效限界所得稅率을 적용하면 귀속임료에 부과되어야 할 세금이 계산되는데, 그 금액이 3,040억원이 된다(<표 3-5> 참조).

<표 3-5> 귀속임료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계산

(단위: 10억원)

◦ 자가소비용 토지	= 과세대상토지 총가액 704,255 × 자가소비 비율 24.0% = 169,021
◦ 귀속임료	= 자가소비용 토지가액 169,021 × 90년 부동산수익률 3% = 5,071
◦ 귀속임료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 귀속임료 5,071 × 실효 한계소득세율 6% = 304

다음으로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연기됨에 따른 소득세 감면액을 계산해 보자. 李性旭(1993)에 의하면 1990년에 발생한 자본이득은 총 162조 6,17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서 비과세·감면되어야 할 자본이득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는 적절한 통계가 없어 알 수 없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처리상황에 관한 국세청의 통계를 보면 비과세 자료의 비중이 1983년에서 1987년 기간중에 평균 25% 정도인데, 이를 그대로 자본이득에 대한 비과세·감면의 비중으로 사용한다. 미실현 자본이득의 상당 부분에 대하여 현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고 있는 관계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부분의 자본이득(當該 토지의 지가상승률이 전국평균율을 초과할 때 전국평균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이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토지초과이득세로서 과세되는 미실현 자본이득의 비중을 계산하려면 지가상승에 관한 특정한 확률분포를 가정하여야 한다. 지가상승에 관하여 계산이 간단한 均等分布(uniform distribution function)를 가정하면 현행 토지초과이득세로 과세되는 미실현 자본이득의 비중은 25%로 계산된다. 전국 토지의 지가상승에 관한 확률분포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관계로 우리는 토지초과이득세로 과세되는 미실현 자본이득의 비중을 25%로 가정한다.讓渡差益 대비 1990년 양도소득세의 실효세율은 25.9%(재무부 세제실, 『주요세무통계자료』, 1991, p.119)로 추정된다. 연간 이자율을 10%로 보고 이상의 자료를 이용하여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의 이연으로 감면되는 이자상당액을 추정하면 2조 3,690억원이 된다(<표 3-6> 참조).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현행 土地保有稅가 소득세의 보완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토지보유세액이 부과되어야 하며 세율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계산해 보자. 현행 소득세제가 지향하는 소득의 분배에 관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귀속임료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3,040억원과 미실현 자본이득의 과세이연에 따른 조세감면액 2조 3,690억원을 합한 총 2조 6,730억원이 토지보유세의 형태로 부과되어야 한다.

이 경우 실효 토지보유세율은 0.38%가 되며, 이는 1990년 실효 토지보유세율 0.08%의 약 5배가 되는 수준이다.

<표 3-6> 미실현 자본이득의 과세이연에 따른 조세감면액 계산

(단위: 10억원)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본이득 : $162,617 \times (1-0.25) = 121,963$
- 토지초과이득세로 과세되지 아니한 미실현 자본이득
: $121,963 \times (1-0.25) = 91,472$
- 양도소득세 상당액 : $91,472 \times 0.259 = 23,691$
- 과세이연에 따른 감면액 : $23,691 \times 0.1 = 2,369$

그러나 토지보유세율은 자가소비용 토지와 영업용 토지에 대해 달리 설정되어야 한다. 미실현 자본이득의 과세이연에 따른 租稅減免額은 모든 토지에 부과되어야 하나, 귀속임료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오직 자가소비용 토지에만 부과되어야 한다. 1990년 과표현실화 비율 15.3%를 감안하면 자가소비용 토지의 가액은 169조 210억원이고 기타 토지의 가액은 535조 2,340억원이 된다. 자가소비용 토지가 부담해야 할 土地保有稅額은 귀속임료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3,040억원과 자본이득 과세이연에 따른 조세감면액 중 자가소비용 토지가 부담해야 할 부분 5,690억원을 합한 8,730억원이 되고, 영업용 토지가 부담해야 할 토지보유세액은 자본이득 과세이연에 따른 조세감면액 중 영업용 토지가 부담해야 할 부분 1조 8,000억원이 된다. 따라서 자가소비용 토지의 경우 실효 토지보유세율은 0.52%가 되어야 하며, 영업용 토지의 경우 실효세율은 0.34%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토지보유세율을 이상과 같이 두 가지로 설정하는 경우 어떤 세율을 어느 토지에 적용하여야 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첫번째 문제는 주거용 토지에 대하여 어떤 세율을 적용하느냐의 문제이다. 주거용 토지

<표 3-7> 현행 토지보유세율과 적정 토지보유세율의 계산

(단위: 10억원)

1990년 현재		적정 토지보유세율	
(전 토지 평균)		(전 토지 평균)	
과세대상 토지총액 (A)	704,255	과세대상 토지총액 (A)	704,255
현행 토지보유세 총계 (B)	593.4	적정 토지보유세 총계(C)	2,673
· 종합토지세	(447.7)	· 歸屬賃料分	(304)
· 토지분 도시계획세	(145.7)	· 자본이득 課稅移延分	(2,369)
실효 토지세율 (B/A)	0.08%	실효 토지세율 (C/A)	0.38%
		(자가소비용 토지)	
		과세대상 토지총액 (D)	169,021
		적정 토지보유세 총계(E)	873
		· 歸屬賃料分	(304)
		· 자본이득 課稅移延分	(569)
		실효 토지세율 (E/D)	0.52%
		(기타 토지)	
		과세대상 토지총액 (F)	535,234
		적정 토지보유세 총계(G)	1,800
		· 자본이득 課稅移延分	(1,800)
		실효 토지세율 (G/F)	0.34%

의 약 7분의 5만 자가소비용이고 나머지는 임대용이기 때문이다. 주거용 토지에 대하여는 일단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주택임대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 주거용 토지에 대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 될 것이다. 현재 주택 임대소득의 경우 과세양성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제도의 설계 여하에 따라서는 임대소득의 양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행정의 단순화 측면에서 보면 주거용 토지가 자가소비에 사용되든 임대 사용되

든 일률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두번째 문제는 우리가 유희토지라 부르는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업무용지 등에 대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토지는 대부분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주에게 보유기간중에는 거의 경제적 효용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귀속임료를 계산할 수 없고 따라서 이론적인 관점에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필요 이상의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하는 심리를 억제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정책적인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토지가운데는 개발하여 임대 등에 제공하면 현재도 年 3% 정도의 賃貸收益을 올릴 수 있는 것들도 상당수 있다고 생각된다.

IV. 경험적 접근방법 : 세원별 회귀분석

이 章에서는 세계 각국의 조세관련 자료를 사용하여 각국의 조세구조와 그 결정요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租稅負擔率 분석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에 있어서는 조세부담률의 총체적 수준을 분석하였으며(Chelliah & Baas 1975, Lots & Morss 1967, Tabellini 1985, Tait, Gratz & Eichengreen 1979), 조세수입의 구조에 착안하여 세원별로 조세부담률을 분석해 본 것은 거의 없는 듯하다. 세원별 조세부담률을 분석한 드문 경우로서 Bahl(1972)은 대표적 세계 접근법(Representative Tax System Approach)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각국별 세제를 세원별로 분석하고 있으나, 각종 세목간의 相互依存性, 즉 조세의 체계적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 하였다. 조세란 개개의 세목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전체로서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여 세제에 요구되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조세부담률에 관한 경험적인 연구에 있어서도 총체적인 조세부담률뿐 아니라 조세의 체계라는 면에 착안하여 세원간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하여 세원별로 조세부담률을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이 章은 모두 4개의 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절에서는 자료 이용이 가능한 54개국(선진국 19개국, 상위개도국 14개국, 하위개도국 12개국, 후진국 9개국)의 조세수입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며, 총조세수입과 국민소득 수준과의 관계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본다. 이어서 제2절에서는 소득단계별로 각국의 조세수입 구조상의 특징을 묘사하고, 한 나라의 조세구조가 다른 나라의 조세구조와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제3절에서는 제2절에서 발견한 조세구조의 결정요인을 이용하여 回歸分析을 통하여 세원별로 조세부담능력 방정식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는 제3절의 회귀분석 결과를 이용

<표 4-1> 조세수입의 구성 (GDP 대비 비율)

(단위 : %)

	연 도		1인당 (GNP (천달러))	소 득 과 세			사 회 보 장 기여금	재 산 과 세	소 비 과 세	무 역 과 세			기 타	합 계
				개 인	법 인	계				수 입	수 출	계		
미 국	1985	1987	17.63	10.3	2.1	12.4	6.7	2.9	4.6	0.3	0.0	0.3	0.0	27.0
캐 나 다	1985	1987	14.38	12.7	3.1	15.8	4.6	3.2	9.5	0.8	0.0	0.8	0.5	34.5
독 일	1985	1987	14.38	9.6	3.6	13.3	15.9	1.0	9.4	0.0	0.0	0.0	0.3	39.8
호 주	1985	1987	10.83	13.1	2.6	15.8	0.0	2.3	8.0	1.2	0.0	1.2	1.3	28.6
스 위 스	1985	1987	21.41	11.2	2.0	13.2	9.8	2.7	4.6	1.5	0.0	1.5	0.0	31.7
일 본	1985	1987	15.80	7.0	6.0	13.0	8.6	2.5	3.5	0.2	0.0	0.2	0.5	28.2
영 국	1985	1987	10.12	10.0	4.2	14.2	6.1	4.7	11.2	0.0	0.0	0.0	0.4	36.6
프 랑 스	1985	1987	12.87	5.7	2.2	7.9	19.1	2.1	12.8	0.2	0.0	0.2	1.4	43.4
이탈리아	1985	1987	10.32	9.6	3.6	13.2	12.3	0.9	9.1	0.2	0.0	0.2	0.0	35.6
스 페 인	1985	1987	5.9	6.3	2.0	8.3	11.2	1.0	8.4	0.9	0.0	0.9	0.1	30.0
네덜란드	1985	1987	11.69	9.2	3.4	12.6	20.3	1.0	11.1	0.0	0.0	0.0	1.1	46.1
벨 기 예	1985	1987	11.36	15.4	3.0	18.5	15.5	0.9	10.6	0.0	0.0	0.0	0.7	46.1
오스트리아	1985	1987	12.05	9.8	1.6	11.5	12.6	1.0	13.1	0.5	0.0	0.5	2.8	41.5
노르웨이	1985	1987	16.54	11.6	5.9	17.5	8.7	1.0	18.4	0.2	0.0	0.2	0.3	46.2
핀 란 드	1985	1987	14.35	8.6	0.6	9.2	3.0	1.1	13.5	0.2	0.0	0.2	0.1	27.1

<표 4-1>의 계속

	연 도		1인당 GNP (천달러)	소득 과 세			사 회 보 장 기여금	재 산 과 세	소 비 과 세	무 역 과 세			기 타	합 계
				개 인	법 인	계				수 입	수 출	계		
덴 마 크	1985	1987	15.18	24.7	3.8	28.5	1.8	2.4	17.1	0.0	0.0	0.0	0.6	50.3
룩셈부르크	1984	1986	12.69	11.3	7.5	18.8	9.9	2.5	9.7	0.0	0.0	0.0	0.2	41.2
아이슬란드	1985	1987	13.40	4.9	0.6	5.5	1.2	2.1	13.4	3.3	0.2	3.5	2.1	27.9
뉴질랜드	1985	1987	8.56	19.9	2.9	22.8	0.0	0.2	8.6	1.4	0.1	1.5	0.3	33.4
한 국	1985	1987	2.60	2.5	2.1	4.5	0.3	1.5	7.4	2.7	0.0	2.7	0.5	16.9
말레이시아(C)	1985	1987	1.75	2.3	7.8	10.1	0.2	0.1	4.8	2.8	1.9	4.7	0.5	20.5
오 만(C)	1985	1987	5.81	0.1	8.2	8.3	0.0	0.0	0.3	1.1	0.0	1.1	0.0	9.7
이 란(C)	1983	1985	3.69	0.2	1.8	2.0	1.7	0.3	1.1	2.1	0.0	2.1	0.2	7.4
남 아 공	1985	1987	1.94	7.7	6.1	13.8	0.4	1.4	8.7	0.9	0.0	0.9	0.4	25.6
가 붕(C)	1983	1985	3.28	1.2	16.3	17.5	0.0	0.1	2.4	5.7	0.5	6.2	0.1	26.3
포르투갈	1985	1987	2.82	2.2	4.7	6.9	8.7	0.6	14.2	1.2	0.0	1.2	0.3	31.9
그 리 스	1985	1987	3.94	4.8	1.4	6.2	12.0	1.0	15.7	1.0	0.0	1.0	0.0	35.8
유 고	1985	1987	2.61	1.1	0.7	1.8	17.0	0.1	6.0	2.7	0.0	2.7	0.0	27.7
헝 가 리	1985	1987	1.81	0.8	11.8	12.6	13.1	2.3	16.8	2.8	0.5	3.4	5.2	53.5
폴 란 드	1985	1987	1.54	0.8	12.4	13.2	8.8	1.8	13.2	1.4	1.4	2.8	4.5	44.3

<표 4-1>의 계속

	연 도		1인당 GNP (천달러)	소 득 과 세			사 회 보 장 기여금	재 산 과 세	소 비 과 세	무 역 과 세			기 타	합 계
				개 인	법 인	계				수 입	수 출	계		
멕시코	1985	1987	1.81	2.0	2.2	4.2	1.9	0.0	10.7	0.8	0.0	0.9	0.1	17.9
우루과이(C)	1985	1987	1.87	0.5	1.1	1.7	6.3	1.1	10.2	2.2	0.8	3.0	1.1	23.4
칠레	1983	1985	1.41	1.3	2.1	3.4	2.3	0.8	12.2	2.5	0.2	2.7	1.7	23.1
필리핀	1985	1987	0.55	1.0	1.6	2.6	0.0	0.4	5.2	2.7	0.2	2.9	0.2	11.4
태국	1985	1987	0.79	1.7	1.4	3.1	0.0	0.4	8.2	2.9	0.2	3.1	0.1	15.0
터키	1985	1987	1.16	5.9	2.5	8.4	3.4	0.8	6.6	0.8	0.0	0.8	2.8	22.7
키프로스(C)	1985	1987	1.31	3.8	0.8	4.6	4.4	0.7	4.7	4.5	0.0	4.5	1.1	20.2
예멘(C)	1984	1986	0.75	1.4	0.8	2.2	0.0	0.2	1.7	8.2	0.0	8.2	2.2	14.6
모로코(C)	1985	1987	0.75	2.4	1.7	4.1	1.1	0.6	9.8	3.0	0.2	3.2	1.0	19.9
튀니지(C)	1985	1987	1.19	2.0	2.0	4.0	2.6	0.6	7.0	8.3	0.3	8.6	0.7	23.4
이집트(C)	1985	1987	1.22	0.5	4.7	5.3	5.6	0.4	4.4	5.2	0.1	5.3	2.5	23.4
짐바브웨(C)	1985	1987	0.56	8.5	5.0	13.5	0.0	0.1	9.2	4.8	0.1	5.0	0.3	27.9
파라과이(C)	1985	1987	1.26	0.0	1.3	1.3	1.2	0.9	2.5	1.0	0.1	1.1	1.1	8.1
에콰도르(C)	1985	1987	1.21	1.4	6.3	7.7	0.0	0.2	3.1	2.5	0.3	2.8	0.2	14.0
콜롬비아(C)	1985	1987	1.18	1.6	1.7	3.3	1.2	0.0	3.5	2.0	0.2	2.2	0.4	10.6

<표 4-1>의 계속

	연 도		1인당 GNP (천달러)	소 득 과 세			사 회 보 장 기여금	재 산 과 세	소 비 과 세	무 역 과 세			기 타	합 계
				개 인	법 인	계				수 입	수 출	계		
인도네시아	1984	1986	0.49	0.6	11.2	11.8	0.0	0.4	3.7	0.7	0.1	0.8	0.1	16.8
파키스탄(C)	1984	1986	0.34	0.0	1.9	1.9	0.0	0.0	5.7	5.1	0.2	5.4	0.0	13.0
인 도	1985	1987	0.30	1.0	1.1	2.0	0.0	0.2	10.1	3.9	0.1	4.0	0.4	16.7
스리랑카(C)	1985	1987	0.39	0.8	2.0	2.8	0.0	0.5	8.1	5.3	1.2	6.5	0.0	18.0
탄자니아(C)	1983	1985	0.29	2.7	2.8	5.5	0.0	0.1	8.9	1.2	0.0	1.2	0.3	16.0
잠 비 아(C)	1985	1987	0.28	1.9	2.9	4.8	0.0	0.1	8.1	3.8	2.9	6.7	0.0	19.7
시에라리온(C)	1985	1987	0.30	0.6	0.7	1.4	0.0	0.0	1.4	2.9	0.1	3.0	0.0	5.7
피 지(C)	1983	1985	1.69	8.3	2.6	10.9	0.0	0.1	2.9	6.7	0.0	6.7	0.3	21.0
모리셔스(C)	1985	1987	1.42	1.2	1.0	2.1	1.0	0.8	4.1	8.6	2.4	11.0	0.1	19.0

IMF,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1991.
 OECD, *Revenue Statistics of OECD Member Countries, 1965~1990*.

<표 4-2> 조세수입의 구성 (총조세수입 대비 비율)

(단위 : %)

	연 도		1인당 GNP (천달러)	소득 과 세			사 회 보 장 기여금	재산 과세	소비 과세	무 역 과 세			기타	합 계
				개인	법인	계				수입	수출	계		
미 국	1985	1987	17.63	38.1	7.9	45.9	24.9	10.8	17.1	1.2	0.0	1.2	0.0	100.0
캐 나 다	1985	1987	14.38	37.0	8.9	45.9	13.5	9.2	27.6	2.4	0.1	2.4	1.3	100.0
독 일	1985	1987	14.38	24.2	9.1	33.3	39.9	2.4	23.5	0.0	0.0	0.0	0.8	100.0
호 주	1985	1987	10.83	45.9	9.2	55.1	0.0	7.9	27.8	4.3	0.2	4.5	4.7	100.0
스 위 스	1985	1987	21.41	35.2	6.3	41.5	30.8	8.5	14.5	4.8	0.0	4.8	0.0	100.0
일 본	1985	1987	15.80	24.7	21.2	45.9	30.3	9.0	12.2	0.6	0.0	0.7	1.9	100.0
영 국	1985	1987	10.12	27.3	11.4	38.7	16.6	12.8	30.7	0.0	0.1	0.1	1.1	100.0
프 랑 스	1985	1987	12.87	13.1	5.0	18.0	44.0	4.8	29.5	0.4	0.0	0.5	3.2	100.0
이탈리아	1985	1987	10.32	26.9	10.2	37.0	34.4	2.6	25.4	0.6	0.0	0.6	0.0	100.0
스 페 인	1985	1987	5.9	21.0	6.7	27.7	37.4	3.4	27.9	3.1	0.0	3.1	0.4	100.0
네덜란드	1985	1987	11.69	19.9	7.4	27.2	44.0	2.2	24.1	0.0	0.0	0.0	2.5	100.0
벨 기 에	1985	1987	11.36	33.5	6.5	40.0	33.6	1.9	23.0	0.0	0.0	0.0	1.5	100.0
오스트리아	1985	1987	12.05	23.7	3.9	27.6	30.4	2.4	31.5	1.2	0.0	1.2	6.8	100.0
노르웨이	1985	1987	16.54	25.2	12.7	37.9	18.8	2.3	39.8	0.5	0.0	0.5	0.7	100.0
핀 란 드	1985	1987	14.35	31.9	2.2	34.1	11.1	3.9	49.7	0.9	0.0	0.9	0.3	100.0

<표 4-2>의 계속

	연 도		1인당 GNP (천달러)	소 득 과 세			사 회 보 장 기여금	재산 과세	소비 과세	무 역 과 세			기타	합 계
				개인	법인	계				수입	수출	계		
덴 마 크	1985	1987	15.18	49.1	7.5	56.6	3.5	4.7	34.0	0.1	0.0	0.1	1.1	100.0
룩셈부르크	1984	1986	12.69	27.4	18.2	45.7	24.1	6.0	23.6	0.1	0.0	0.1	0.6	100.0
아이슬란드	1985	1987	13.40	17.7	2.2	19.9	4.3	7.4	48.1	12.0	0.7	12.7	7.6	100.0
뉴 질 랜 드	1985	1987	8.56	59.7	8.6	68.3	0.0	0.7	25.7	4.2	0.2	4.3	1.0	100.0
한 국	1985	1987	2.60	14.6	12.2	26.8	1.6	8.8	43.9	15.7	0.0	15.7	3.1	100.0
말레이시아(C)	1985	1987	1.75	11.4	38.2	49.5	0.9	0.6	23.4	13.9	9.3	23.2	2.3	100.0
오 만(C)	1985	1987	5.81	0.7	84.3	85.0	0.0	0.0	3.4	11.6	0.0	11.6	0.0	100.0
이 란(C)	1983	1985	3.69	2.5	24.6	27.1	22.9	3.5	15.5	28.2	0.1	28.4	2.7	100.0
남 아 공	1985	1987	1.94	29.8	23.9	53.7	1.6	5.5	34.1	3.5	0.1	3.6	1.4	100.0
가 붕(C)	1983	1985	3.28	4.6	61.8	66.3	0.0	0.4	9.3	21.7	1.9	23.6	0.4	100.0
포 르 투 갈	1985	1987	2.82	6.9	14.6	21.5	27.3	1.9	44.5	3.7	0.0	3.8	1.0	100.0
그 리 스	1985	1987	3.94	13.4	3.9	17.3	33.4	2.7	43.8	2.7	0.0	2.7	0.1	100.0
유 고	1985	1987	2.61	3.8	2.6	6.4	61.5	0.4	21.8	9.6	0.0	9.6	0.0	100.0
형 가 리	1985	1987	1.81	1.5	22.1	23.6	24.6	4.3	31.5	5.3	1.0	6.3	9.7	100.0
폴 란 드	1985	1987	1.54	1.8	28.0	29.8	19.9	4.0	29.8	3.1	3.2	6.3	10.2	100.0

<표 4-2>의 계속

	연 도		1인당 GNP (천달러)	소 득 과 세			사 회 보 장 기여금	재 산 과 세	소 비 과 세	무 역 과 세			기 타	합 계
				개 인	법 인	계				수 입	수 출	계		
멕시코	1985	1987	1.81	11.2	12.2	23.3	10.9	0.3	60.0	4.7	0.1	4.8	0.7	100.0
우루과이(C)	1985	1987	1.87	2.3	4.9	7.2	27.0	4.7	43.4	9.5	3.3	12.8	4.9	100.0
칠레	1983	1985	1.41	5.8	9.1	14.9	9.7	3.3	52.8	10.8	0.9	11.8	7.5	100.0
필리핀	1985	1987	0.55	8.9	14.3	23.2	0.0	3.4	45.8	23.6	1.9	25.5	2.1	100.0
태국	1985	1987	0.79	11.4	9.5	20.9	0.0	2.5	54.9	19.4	1.5	20.9	0.8	100.0
터키	1985	1987	1.16	26.0	10.9	36.8	14.9	3.5	28.8	3.7	0.0	3.7	12.3	100.0
키프로스(C)	1985	1987	1.31	18.9	4.0	22.9	22.1	3.5	23.5	22.5	0.0	22.5	5.5	100.0
예멘(C)	1984	1986	0.75	9.9	5.3	15.2	0.0	1.5	11.6	56.5	0.0	56.5	15.1	100.0
모로코(C)	1985	1987	0.75	11.9	8.6	20.5	5.7	2.9	49.5	15.2	1.0	16.2	5.3	100.0
튀니지(C)	1985	1987	1.19	8.4	8.7	17.0	10.9	2.7	29.9	35.4	1.2	36.6	2.8	100.0
이집트(C)	1985	1987	1.22	2.3	20.1	22.4	23.7	1.6	18.9	22.2	0.5	22.7	10.7	100.0
짐바브웨(C)	1985	1987	0.56	30.4	17.7	48.1	0.0	0.4	32.8	17.3	0.5	17.8	0.9	100.0
파라과이(C)	1985	1987	1.26	0.0	15.8	15.8	15.3	10.6	31.3	12.0	1.6	13.6	13.5	100.0
에콰도르(C)	1985	1987	1.21	10.1	45.2	55.3	0.0	1.3	21.9	18.1	2.0	20.1	1.5	100.0
콜롬비아(C)	1985	1987	1.18	15.3	15.8	31.1	11.1	0.4	32.7	19.2	1.8	21.0	3.8	100.0

<표 4-2>의 계속

	연 도		1인당 GNP (천달러)	소득 과 세			사 회 보 장 기여금	재산 과세	소비 과세	무 역 과 세			기타	합 계
				개인	법인	계				수입	수출	계		
인도네시아	1984	1986	0.49	3.7	66.5	70.2	0.0	2.3	21.8	4.3	0.5	4.8	0.8	100.0
파키스탄(C)	1984	1986	0.34	0.0	15.0	15.0	0.0	0.3	43.7	39.4	1.6	41.1	0.0	100.0
인 도	1985	1987	0.30	5.8	6.4	12.2	0.0	1.0	60.5	23.3	0.4	23.7	2.6	100.0
스리랑카(C)	1985	1987	0.39	4.7	11.1	15.8	0.0	2.8	45.2	29.5	6.7	36.2	0.0	100.0
탄자니아(C)	1983	1985	0.29	16.8	17.4	34.2	0.0	0.7	55.7	7.3	0.3	7.6	1.8	100.0
잠 비 아(C)	1985	1987	0.28	9.6	15.0	24.6	0.0	0.3	41.1	19.5	14.5	34.0	0.1	100.0
시에라리온(C)	1985	1987	0.30	10.7	12.8	23.5	0.0	0.0	23.9	49.9	2.3	52.2	0.4	100.0
피 지(C)	1983	1985	1.69	39.7	12.5	52.2	0.0	0.5	13.9	32.1	0.0	32.1	1.3	100.0
모리셔스(C)	1985	1987	1.42	6.1	5.1	11.2	5.1	4.3	21.4	45.1	12.6	57.7	0.4	100.0

자료: IMF,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1991.

OECD, *Revenue Statistics of OECD Member Countries*, 1965~1990.

주: (C)는 중앙정부만의 조세수입을 나타냄.

<표 4-3> 소득수준별 조세수입의 구성 (GDP 대비 비율)

(단위: %)

1인당 GNP(Y) (천달러)	소득과세			사회보장 기여금	재산과세	소비과세	무역과세			기타	합계
	개인	법인	계				수입	수출	계		
8.5<Y	11.1	32	14.3	8.8	1.8	10.3	0.6	0.0	0.6	0.7	36.5
1.4<Y<6.0	2.0	5.6	7.6	5.2	0.8	8.9	2.1	0.4	2.5	1.1	26.0
0.5<Y<1.4	2.5	2.5	5.0	1.6	0.4	5.5	3.8	0.2	4.0	1.1	17.6
Y<0.5	1.9	2.9	4.8	0.1	0.2	5.9	4.2	0.8	5.0	0.1	16.2

<표 4-4> 소득수준별 조세수입의 구성 (총조세수입 대비 비율)

(단위: %)

1인당 GNP(Y) (천달러)	소득과세			사회보장 기여금	재산과세	소비과세	무역과세			기타	합계
	개인	법인	계				수입	수출	계		
8.5<Y	30	9	39	23	5	28	2	0	2	2	100
1.4<Y<6.0	8	24	32	17	3	33	10	2	12	3	100
0.5<Y<1.4	13	14	27	9	3	32	22	1	23	6	100
Y<0.5	11	18	29	1	1	36	31	1	32	1	100

하여 우리나라의 조세수입 구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총체적 조세부담 수준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세부담률과 1인당 GNP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상관관계는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지지되는 바와 같이 우리의 예상과 일치되는 것이다. 租稅負擔能力 側面(supply side)에서 보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과세표준 내지 세액은 소득의 증가속도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소득증가에 따른 산업구조의 근대화로 징세가 용이하게 되는 것이나 소득세의 누진세율체계에 기인한다. 財政需要 側面 (demand side)에서 보면 소득의 증가에 따라 도시화가 진전되며,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공공행정의 수요가 증가되고, 증가된 재정수요는 결국 조세부담률의 증대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표 4-3>은 <표 4-1>의 정보를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소득수준별로 조세부담률을 보면 선진국의 조세부담률은 GDP 대비 평균 36.5%인 데 반하여, 상위개도국은 평균 26%이고 하위개도국과 후진국은 16~17% 내외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선진국내에 있어서 각국의 조세부담률을 살펴보면, 미국·호주·일본이 GDP 대비 30% 미만의 수준을 보이는 데 반하여, 프랑스·베네룩스3국·北歐諸國·독일·오스트리아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에 있어서는 40%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상위개도국에 있어서는 유럽 및 유럽 문화권(포르투갈, 그리스, 남아공, 가봉)과 공산권(유고, 헝가리, 폴란드) 등의 조세부담률은 GDP 대비 25%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 데 반하여, 멕시코·한국·오만 등은 20% 미만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위개도국과 후진국은 주로 아프리카와 남미, 그리고 남태평양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지역간의 특성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한 나라의 조세부담률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1인당 국민소득 수준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결정요인으로서 각국의 産業構造와 對外開放度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변수들은 주로 조세부담능력 측면을 반영하는 변수로서 이러한 요인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각국의 총체적인 조세부담률 수준을 회귀분석할 수도 있다(Bahl 1972, Tabellini 1985). 이러한 전통적인 방법은 각국의 조세부담능력 측면을 반영하는 변수의 횡단면 자료(Cross- Section Data)를 이용하여 각국의 조세부담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방법은 각국의 총체적 조세부담능력의 측정에 있어서 두 가지의 큰 제약요인을 내포하고 있는데, 첫째는 횡단면 자료가 내포하는 제약으로 독립변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각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고려할 수 없다는 제약이고, 둘째는 조세부담률의 측정에 있어서 조세부담능력 측면 이외에 재정수요 측면이 고려되지 아니함에 따른 소위 變數省略(Omission of Variables)이 내포하는 偏倚(bias) 문제이다. 이상의 두 가지 제약요인을 극복하여 재정공급 측면뿐 아니라 재정수요 측면도 고려하고, 각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자 패널자료(panel data)를 이용하여 고정효과모형 (fixed-effect model)과 확률효과모형 (random-effect model)을 통한 분석방법으로 각국의 조세부담능력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수도 있다(孫光洛·安鍾範, 1993).

우리나라의 총체적 조세부담수준이 우리 경제의 조세부담능력이나 재정수요 측면에 비추어 어느 정도로 높거나 낮은 수준인지는 이상에 소개된 기왕의 연구문헌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孫光洛과 安鍾範(1993)은 우리나라의 1980년대 조세부담수준이 각종 비과세·감면·탈세 등의 영향으로 분석대상에 포함된 개도국보다도 GDP 대비 2% 정도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짓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이 총체적 조세부담수준의 측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체계의 적정성 여부의 검증에 있는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총체적 조세부담수준을 이상

의 방법을 통해 직접적으로 측정하기보다는 稅源別로 租稅負擔水準을 측정하여 우리나라 조세체계가 국제적인 평균치와 어느 정도 접근하여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조세구조

총체적 조세부담수준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조세구조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Tanzi, 1983). 조세구조에 대한 연구도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예를 들어 어떤 나라는 조세수입의 많은 부분을 직접세에 의존하고 있는 데 반하여 다른 나라는 간접세가 조세수입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조세구조상의 차이에는 반드시 특정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되기 때문이다. 각국별 조세구조상의 차이는 많은 부분이 각국의 역사적·문화적 요인에 기인할 것이지만, 그 이상으로 경제적·사회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節에서는 각국의 조세를 크게 소득과세, 소비과세, 무역과세, 기타조세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가. 소득과세

세계 각국의 소득과세 비중을 보면 선진국과 여타 국가간에 큰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선진국의 소득과세 비중은 GDP 대비 평균 14~3%인 데 반하여, 상위 개도국의 소득과세 비중은 그 절반 수준인 7.6%이며 하위개도국과 후진국의 소득과세 비중은 GDP 대비 5% 내외 수준이다(<표 4-3> 참조).

상위개도국과 하위개도국 및 후진국의 소득과세 비중이 7.6%와 5%로 각각 차이가 나는 것은 법인소득과세의 비중이 이들 국가간에 큰 차이가 나는 것에 기인한다. 개인소득과세의 비중은 이들 국가에 있어서 대부분 GDP 대비 3% 미만 수준이다(예외: 남아공, 터키, 키프로

스, 짐바브웨, 피지).

선진국의 경우 특히 개인소득과세의 비중이 높는데, 개도국 및 후진국의 개인소득과세 비중이 GDP 대비 3% 미만인 데 반하여 선진국은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서 10% 이상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예외: 일본,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이슬란드). 선진국의 경우 법인소득과세의 비중은 GDP 대비 평균 3.2%로서, 상위개도국 평균 5.6%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고 오히려 하위개도국이나 후진국의 법인소득과세 비중과 비슷한 수준이다.

個人所得課稅의 과세표준은 개인의 소득(1인당 GNP)이며, 대부분의 국가가 개인소득과세 분야에 있어서 누진세율체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1인당 GNP가 증가하면 개인소득과세의 비중은 1인당 GNP 증가율 이상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개인소득과세의 소득탄성치 > 1). 그러나 개도국과 후진국을 보면 1인당 GNP의 증가가 반드시 개인소득과세 비중의 증대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 나타난다. 또한 개도국과 후진국에 있어서 개인소득과세의 명목세율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도국 및 후진국의 개인소득과세 비중이 GDP 대비 3% 미만으로 선진국의 10% 이상 수준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것은 개도국과 후진국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회피 내지는 탈세 수준과 개인소득과세 분야에 있어서의 광범위한 비과세·감면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개도국 및 후진국에 있어서 개인소득과세의 비중이 떨어지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개인소득과세가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농업부문의 비중이 크며, 기업의 簿記慣習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경제활동의 대부분이 소규모 기업에 의해 행하여지는 경우 개인소득과세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어렵다.

개도국에 있어서 개인소득과세는 종종 공공분야와 대기업 및 외국계

법인 등에 종사하는 피고용인에 대한 賃金稅(wage tax)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대규모 기업 혹은 단체에 고용된 피고용인의 숫자와 임금 총액이 증가됨에 따라 개인소득과세의 비중도 증대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anzi, 1983).

法人所得課稅의 과세표준은 법인의 소득이다. 그러나 각국의 법인소득을 직접 측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법인소득과 연관이 높은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개도국 및 후진국의 경우 대부분의 생산이 소수의 대규모 법인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이들 법인기업에 대한 과세가 다른 부문에 비해 용이하고, 조세행정의 편의성 때문에 이들 나라에 있어서 법인소득과세의 비중은 매우 높은 편이다. 광공업의 비중이 법인소득과 연관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광공업분야가 상당 부분에 있어서 대규모 투자를 요하고 따라서 이 분야의 많은 기업이 법인기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소득의 대리변수(proxy)로서 광공업의 비중이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광공업의 비중이 높을 경우 법인세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일용 생각이 되지만 선진국의 경우 광공업의 비중은 높으나 법인세의 비중은 상위개도국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고 하위개도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선진국의 경우 법인소득세의 비중이 낮은 것은 소득과세 기능의 대부분을 개인소득세가 수행하고 있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개인소득세의 기능이 강화될 경우 법인세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나. 내국 소비과세

세계 여러나라의 내국 소비과세 비중을 보면 선진국이 GDP 대비 평균 10% 내외, 상위개도국이 9% 내외 그리고 하위개도국과 후진국이 5~6% 내외임이 나타난다(<표 4-3> 참조).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과세의 비중도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그러나 그 증가

속도에 있어서는 소득증가에 따른 소득과세 비중의 증가속도보다 완만함을 알 수 있다. 累進稅率體系를 가진 소득과세의 경우 소득증가에 따라 소득과세의 비중이 증대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比例稅率體系를 가진 소비과세의 경우에 있어서도 소득증가에 따라 소비과세의 비중이 증대되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된다. 즉, 소비의 증가속도는 소득의 증가속도보다 완만할 뿐 아니라 비례세율체제하에서는 소득 혹은 소비가 증가하더라도 소비과세의 GDP 대비 비중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일용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의 경우 일반소비세에 있어서는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에 대해 상당히 넓은 부문에 대하여 비과세 내지 면세를 하고 있고, 개별소비세의 대상품목들은 대개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큰 사치품 등인 실정을 감안하면, 소득증가에 따라 소비과세의 GDP 대비 비중이 증대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보통 선진국은 간접세의 비중, 즉 소비과세의 비중이 여타 국가의 간접세 비중보다 낮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한 사실은 <표 4-4>에 의해서도 확인되는데, 선진국의 소비과세 비중은 평균 총조세의 28% 수준인 데 반하여 여타 국가의 소비과세 비중은 평균 총조세의 32~36% 수준인 것이다. 그러나 국가별 소비과세의 비중을 GDP 대비 비중으로 보면 <표 4-3>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선진국의 소비과세 비중은 평균 GDP 대비 10%를 상회하는 반면, 상위개도국은 9% 내외이고 하위개도국과 후진국은 GDP 대비 5~6% 수준으로 선진국보다 소비과세의 비중도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흔히 직접세 비중을 제고하고 간접세 비중을 낮추어 선진국형 조세구조를 갖추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소비과세의 세부담을 인하하여 간접세 비중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세의 세부담을 인상하여 직접세 비중을 높이는 것이 선진형 세제로 접근하는 길임을 알 수 있다.

소비과세는 대개 일반소비세와 개별소비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

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대개 생필품 등 일부 면세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한 소비지출이며,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석유류, 담배, 주류 등 특정품목에 대한 소비지출이다. 소비과세의 과세표준을 정확히 측정하려면 이상의 個個 品目에 대한 소비지출 자료의 이용이 가능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각국별로 개개 품목에 대한 자료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자료획득의 어려움 때문에 여기서는 소비과세의 과세표준으로 민간소비지출을 사용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GDP 대비 민간소비지출의 비중이 클 때 소비과세의 GDP 대비 비중도 클 것으로 생각된다.

내국소비과세와 개인소득과세간에는 과세에 있어서 대체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Bahl, 1972). 내국소비세는 사실 소득세 면세계층이나 소득세의 징수가 행정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간접적으로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과세범위를 넓히는 역할을 한다. 또한 내국소비세는 개인소득세 부담의 증가가 초래할 위험이 있는 근로·투자·저축 등에 대한 역효과를 걱정하지 아니하고 현재 개인소득세를 지불하고 있는 계층의 세부담을 높일 수 있게 한다. 일반적으로 특정 시대에 있어서 이들 두 세목의 세율에 상한선이 있으며 그러한 상한선은 보통 인접국가의 세율이나 조세정책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나라의 개인 소득세율이 인접국가의 세율과 비교하여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일 때, 세수증대를 위하여 이 경우 개인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하기보다는 내국소비세의 세부담을 인상하는 방안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내국소비세와 개인소득세가 상호 대체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국소비세의 GDP 대비 비중의 증대가 반드시 개인소득세의 GDP 대비 비중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라 조세부담률이 증가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내국소비세와 개인소득세의 GDP 대비 비중이 함께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 무역과세

무역과세에 있어서 수입과세와 수출과세의 결정요인은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각각 나누어서 別個로 설명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輸入課稅의 비중을 보면 선진국의 경우 GDP 대비 평균 0.6%에 지나지 아니하나 상위개도국은 2.5%, 하위개도국은 3.8% 그리고 후진국의 수입과세 비중은 GDP 대비 4.2%나 된다. 상당수의 개도국 및 후진국에 있어서 수입과세는 단일 세목으로서 가장 중요한 稅目이기도 하다. 특히, 지역적으로는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에 있어서 수입과세의 중요성이 두드러진다.

1인당 소득의 증가에 따라 총조세부담률은 증가하나 수입과세의 GDP 대비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이에 따라 총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수입과세의 비중도 소득증가에 반비례하여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표 4-4>를 보면 수입과세가 총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후진국 평균 32%에서 선진국 평균 2%로 급격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 후진국의 경우 소규모 농업이나 영세한 자영업이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근대적인 유통구조가 확립되지 아니하여 조세를 부과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후진국에 있어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곳이 바로 수입과 수출 부문이어서 이 부문이 총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한 나라가 중진국이 되면 그 나라는 이제 선진국 등으로부터 강력한 관세인하 압력을 받게 되고 선진국의 경우 자유무역의 원칙에 따라 관세가 없거나 관세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경제발전에 따라 관세율의 인하 내지는 관세감면의 증대가 국제사회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경제가 개방되어 있는 반면 내국소비과세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나라일수록 수입과세의 비중이 높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러

한 추측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표 4-5>에서 수입과세의 비중이 높은 나라와 내국소비과세의 비중이 높은 나라를 각각 4개국씩 선별하여 보았다. 여기에서 우리는 兩 稅目間에 어느 정도의 代替性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내국소비세를 주로 사용하는 나라는 관세를 거의 조세수입 확보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관세를 주로 사용하는 나라는 튀니지를 제외하고는 내국소비세를 별로 이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수입과세, 즉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품의 가격이다. 통상 관세는 주로 消費財에 부과되며 生産財에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양자를 구별한 통계를 구하기 어려워 여기서는 수입액 전체를 수입과세의 과세표준으로 본다. 수입품 가운데 소비재와 생산재의 비율이 나라간에 큰 변화가 없으며, 수입품의 구조도 또한 비슷하다는 엄격한 가정이 내포되어 있다.

<표 4-5> 간접세 稅收의 對GDP 비율

(단위: %)

	수입과세	내국소비과세	간 접 세
(수입과세의 비중이 높은 나라)			
예멘(C)	8.2	1.7	9.9
튀니지(C)	8.3	7.0	15.3
피지(C)	6.7	2.9	9.6
모리셔스(C)	8.6	4.1	14.5
(내국소비과세의 비중이 높은 나라)			
노르웨이	0.2	18.4	18.6
덴마크	0.0	17.1	17.1
그리스	1.0	15.7	16.7
헝가리	2.8	16.8	19.6

주: (C)는 중앙정부만의 조세수입을 나타냄.

輸出課稅는 아직까지 몇몇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수입과세에 비해서 그 중요성이 크게 떨어진다. 선진국에 있어서 수출과세는 존재하지 않으며 여타국가에 있어서 수출과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후진국의 평균이 0.8%, 하위개도국이 0.2%, 상위개도국이 0.4% 정도로 나타난다.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잠비아, 모리셔스 등의 나라에 있어서 수출과세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다.

수출과세는 법인소득과세와 상호대체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Lotz와 Morss(1970)는 법인소득과세의 수준이 수출부문의 비중, 특히 광물이나 원유의 비중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또한 수출세의 비중은 농산물 수출액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발견하였다. 사실 수출과세나 법인소득과세는 상당 수준에 있어서 수출품이라는 동일한 부문에 과세되는 다른 명칭의 세금에 지나지 않는다. 개도국이나 후진국에 있어서 법인소득과세는 광물의 수출이 많은 나라에서 흔히 이용되는데, 이는 그러한 광물의 수출이 주로 큰 규모의 법인기업에 의해 행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산물의 수출이 지배적인 나라에서는 수출과세가 지배적인데, 이는 농업생산에 소득과세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도 법인소득과세와 수출과세를 동일한 세목으로 취급하며, 과세표준으로는 광공업 이외에 농산물 수출액을 추가한다.

라. 기타 조세

나머지 조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면, 먼저 社會保障寄與金の 경우 조세수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과 상위개도국에 있어서는 소득 및 소비과세 다음으로 높으며, 하위개도국과 후진국에 있어서는 그 비중이 매우 미미함을 알 수 있다(<표 4-4> 참조). 사회보장기여금의 課稅標準은 임금이고 한 나라의 임금수준은 1인당GNP와 비례하므로, 사회보장기여금과 1인당GNP간에 높은 相關關係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회보장기여금의 GNP 대비 비중을 보면 선진국의

평균이 8.8%, 상위개도국이 5.2%, 하위개도국이 1.6%, 그리고 후진국이 0.1%로 나타난다(<표 4-3> 참조).

세 가지의 이론적인 과세표준, 즉 소득·소비·재산 가운데 財産課稅의 중요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산과세의 GNP 대비 비중은 선진국의 경우 1.8%이고, 여타 국가에서는 1% 미만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재산과세의 과세표준은 그 나라의 축적된 재산이 되겠으나 그러한 각국별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 1인당GNP를 대리변수로 쓴다. 재산과세와 1인당 GNP간에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3. 세원별 조세부담능력 방정식의 추정

가. 자료

분석에 포함된 국가는 선진국이 19개국, 상위개도국이 14개국, 하위개도국이 12개국, 그리고 후진국이 9개국으로 총 54개국이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주로 1985년에서 1987년까지의 3개년 자료의 평균치를 사용하여, 특정 연도의 일시적인 변동사항이 전체 자료에 미치는 영향을 극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분석대상 국가와 기간의 선정은 자료의 이용 가능성을 따랐으며, 자료의 미비로 제외된 국가가 체계적인 일관성을 가지지 않아 우리의 분석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 장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주로 IMF 발간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IFS) 및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GFS)와 UN 발간 Yearbook of National Account Statistics에서 수집되었고, 사용된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추정대상이 되는 內生變數들로서 제반 조세를 크게 개인소득과세, 법인 및 수출관련과세, 내국소비과세, 수입과세, 사회보장기여금,

재산과세 등으로 나누었다.

i) 개인소득과세 부담률(INDTR) : 각국의 개인소득과세의 세수를 해당국가의 GDP로 나눈 비율이다.

ii) 법인 및 수출관련과세 부담률(CPXTR) : 각국의 법인소득과세와 수출과세의 합계를 해당국가의 GDP로 나눈 비율이다. 법인소득과세와 수출과세는 상당 부분에 있어서 수출이라는 동일 분야에 대한 과세로서 상호대체성이 다른 어느 조세보다 높기 때문에 하나의 조세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Lotz & Morss 1970, Bahl 1972).

iii) 내국소비과세 부담률(DOMTR) : 각국의 내국소비과세의 세수를 해당국가의 GDP로 나눈 비율이다.

iv) 수입과세 부담률(IMPTR) : 각국의 수입과세의 세수를 해당국가의 GDP로 나눈 비율이다.

v) 사회보장기여금(SSCR) 및 재산과세 부담률(PRPTR) : 각국의 사회보장기여금 및 재산과세의 세수를 해당국가의 GDP로 각각 나눈 비율이다.

다음으로 설명변수로서 각 세목의 과세표준 혹은 그 대리변수를 사용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vi) 1인당GNP(CGNP) : 각국의 1인당GNP는 소득과세, 사회보장기여금, 재산과세 등의 과세표준 혹은 그 대리변수로 사용된다.

vii) 법인관련부문 비율(BSR) : 각국의 광공업 및 농업수출액을 해당국가의 GDP로 나눈 비율로서, 이는 법인 및 수출관련과세의 과세표준의 대리변수로 사용된다.

viii) 민간소비 비율(PCR) : 각국의 민간소비액을 해당국가의 GDP로 나눈 비율로서, 소비과세 과세표준의 대리변수로 사용된다.

ix) 수입 비율(IMR) : 각국의 수입액을 해당국가의 GDP로 나눈 비율로서, 수입과세 과세표준의 대리변수로 사용된다.

나. 분석모형

조세란 개개의 세목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전체로서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여 세제에 요구되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있다. 제2절에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한 稅源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법이 나라마다 다를 수 있으며, 특정 세원으로 총당할 수 있는 稅收의 수준이 다른 세원의 세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우선 개개 세원의 세수는 해당 세원의 과세표준의 크기에 의하여 영향을 받음은 물론이고, 다른 세원의 세수에 의하여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제2절의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세원별 세수의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개인소득과세의 부담률(INDTR)은 개인소득과세의 과세표준인 1인당GNP(CGNP)의 수준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법인 및 수출관련과세의 부담률(CPXTR)은 이 부분의 과세표준의 대리변수인 법인관련부문 비율(BSR)과 개인소득과세 부담률(INDTR)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으로 가정되어 있다. 개인소득과세의 부담률이 법인관련과세 부담률의 설명변수에 포함된 것은 개인소득과세와 법인소득과세가 상당한 정도의 代替關係에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즉, 선진국이 될수록 법인소득과세가 개인소득과세로 대체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다.

내국소비과세의 부담률(DOMTR)은 이 부분의 과세표준의 대리변수인 민간소비 비율(PCR)과 내국소비과세와 상당한 정도의 대체관계에 있다고 생각되는 개인소득과세의 부담률(INDTR)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되어 있다. 여기에서도 선진국이 될수록 내국소비과세의 상당부분이 개인소득과세로 대체되어간다는 생각이 포함되어 있다. 수입과세의 부담률(IMPTR)은 이 부분 과세표준의 대리변수인 수입 비율(IMR)과 내국소비세 부담률(DOMTR) 및 1인당GNP(CGNP) 등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내국소비세의 부담률이 수입과세 부담률의 설명변수에 포함된 것은 수입과세와 내국소비세가 상당 수준의 代替關係에 있다고 본 때문이며, 1인당GNP가 설명변수에 포함된 것은 선진국이 될수록 자유무역의 원칙에 입각한 교역에 충실하다는 일반적인 사실 때문이다.

그밖에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SSCR)과 재산과세 부담률(PRPTR)은 1인당GNP의 수준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으로 본다. 우리는 모든 변수가 각 방정식에 線形的으로 포함된다고 가정한다. 이상의 논의를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text{INDTR} = a_0 + a_1 \cdot \text{CGNP} + e_1 \dots \dots \dots (4.1)$$

$$\text{CPXTR} = b_0 + b_1 \cdot \text{BSR} + b_2 \cdot \text{INDTR} + e_2 \dots \dots \dots (4.2)$$

$$\text{DOMTR} = c_0 + c_1 \cdot \text{PCR} + c_2 \cdot \text{INDTR} + e_3 \dots \dots \dots (4.3)$$

$$\text{IMPTR} = d_0 + d_1 \cdot \text{IMR} + d_2 \cdot \text{DOMTR} + d_3 \cdot \text{CGNP} + e_4 \dots (4.4)$$

$$\text{SSCR} = g_0 + g_1 \cdot \text{CGNP} + e_5 \dots \dots \dots (4.5)$$

$$\text{PRPTR} = h_0 + h_1 \cdot \text{CGNP} + e_6 \dots \dots \dots (4.6)$$

위 식에서 $e_1, e_2, e_3, e_4, e_5, e_6$ 등은 각 방정식의 誤差項을 나타낸다.

식 (4.1)에서 식 (4.4)까지의 방정식에서 개인소득세 부담률(INDTR)이 법인관련과세 부담률(CPXTR)이나 내국소비세 부담률(DOMTR)에 영향을 미치나 逆으로 법인관련과세 부담률이나 내국소비세 부담률이 개인소득세 부담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국소비세 부담률(DOMTR)이 수입과세 부담률(IMPTR)에 영향을 미치나 逆으로 수입과세의 부담률은 내국소비세의 부담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이 될수록 대체로 개인소득세의 비중이 높아지는 동시에 관세는 내국소비세로 대체되어가는 추세를 감안한 것이다. 조세의 체제적 성격, 즉 稅源間的 聯關性이 있으나 그 관계가 일방적인 것이므로 이는 通常의 보통최소

자승법(OLS)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 분석결과

<표 4-6>은 세원별 조세부담률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개인소득과세 부담률에 관한 방정식을 보면 1인당GNP가 개인소득과세 부담률에 有意的인 正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법인 및 수출 관련과세 부담률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보면, 법인관련 부문의 비율은 유의적인 正의 영향을 주고 있음이 나타나나 개인소득과세 부담률은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못함이 나타난다. 즉, 선진국이 될수록 개인소득과세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법인소득과세의 기능이 줄어들 것이라는 가정은 경험적 사실에 의해 뒷받침되지 아니한다. 법인관련 부문의 비율을 국별로 살펴보면, 선진국의 법인관련 부문 비율(24%)이 의외로 개도국(상위개도국 31%, 하위개도국 25%)이나 후진국(25%)보다 높지 않음이 나타나는데, 선진국이 될수록 수출보다는 內需市場에 중점을 두며, 광공업보다는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커지는 데 그 원인이 있지 아니한가 생각된다.

내국소비과세 부담률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살펴보면, 내국소비과세의 과세표준인 민간소비는 有意的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개인소득세 부담률은 正의 有意的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낮아서 대부분의 소득계층이 소득세 면세점 이하에 있다든지, 소득세의 세율이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일 경우 내국소비세를 이용하여 과세범위를 넓혀가는 등 내국소비과세와 개인소득과세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된다. 그러한 밀접한 상관관계는 우리의 분석에서도 확인되는데 내국소비과세와 개인소득세의 관계간에 유의성이 매우 높은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상관관계가 일반적으로 추측하듯이 逆의 상관관계가 아니라 正의 상관관계로 확인됨은 의외의 일이라 할 것이다. 이는 한 나라가 소

<표 4-6> 세원별 조세부담률 방정식 추정

세원별 조세부담률 방정식	R2	F	N
$\text{INDTR} = 0.016082 + 0.006681 \text{ CGNP}$ <p style="text-align: center;">(2.279) (7.823)</p>	0.5454	61.196	53
$\text{CPXTR} = 0.006427 + 0.107810 \text{ BSR} + 0.022605 \text{ INDTR}$ <p style="text-align: center;">(0.465) (2.407) (0.316)</p>	0.1065	2.979	53
$\text{DOMTR} = 0.080400 - 0.022839 \text{ PCR} + 0.302670 \text{ INDTR}$ <p style="text-align: center;">(1.933) (-0.372) (2.761)</p>	0.1601	4.763	53
$\text{IMPTR} = 0.031288 + 0.040868 \text{ IMR} - 0.001885 \text{ CGNP}$ <p style="text-align: center;">(4.641) (2.444) (-4.442)</p> $- 0.127124 \text{ DOMTR}$ <p style="text-align: center;">(-2.154)</p>	0.4215	11.901	53
$\text{SSCR} = 0.022063 + 0.004749 \text{ CGNP}$ <p style="text-align: center;">(2.290) (4.072)</p>	0.2454	16.584	53
$\text{PRPTR} = 0.003915 + 0.001104 \text{ CGNP}$ <p style="text-align: center;">(2.271) (6.338)</p>	0.4296	40.168	53

주 : () 안은 t값을 나타냄.

득수준의 상승에 따라 개인소득과세의 비중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내국 소비과세의 비중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前節에서도 확인된 것이다. 선진국이 될 수록 소득과세의 비중이 높은 것은 소득수준 상승에 따라 개인소득과세의 증가속도가 내국소비과세의 증가속도보다 빠른 데에 기인하는데, 이는 내국소비세 방정식에서 개인소득과세 부담률의 계수값(0.302670)

이 1보다 작은 것에서 증명된다.

수입과세 부담률에 관한 방정식을 보면, 수입액의 비중이 높고 후진국이며 내국소비세의 비중이 낮은 경우 수입과세의 부담률이 높으리라는 前節에서의 추측이 모두 경험에 의해 사실임이 나타나며, 有意性도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그밖에 사회보장기여금 및 재산과세 부담률에 대하여는 우리가 기대한 바와 같이 1인당GNP가 유의적인 正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세원별 회귀분석결과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의 조세구조

前節에서 본 稅源別 回歸分析의 결과는 각국의 세원규모와 그에 상응하는 조세부담능력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방정식이다. 세원규모 혹은 과세표준 대리변수와 관련된 것으로서 우리나라 변수의 값을 보면 1985년에서 1987년 사이 3년간 평균치로서 1인당GNP(CGNP)는 2,600달러이고 법인 및 수출관련부문의 GDP 대비 비율은 0.32이며 민간소비의 GDP 대비 비율(PCR)은 0.53이고 수입액의 GDP 대비 비율은 0.33으로 나타난다. <표 4-6>의 방정식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세원별 조세부담능력을 추정해 본 결과는 다음의 <표 4-7>에 나타나 있다.

이상의 세원별 조세부담능력 추정결과를 우리나라의 조세구조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중요한 含意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첫째, 직·간세 비율의 시정과 관련하여 역진적인 내국소비세의 부담률을 낮춤으로써 직접세 비중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내국소비세 분야에 국한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실제 내국소비세 부담률은 거의 다른 나라의 내국소비세 부담능력수준과 비슷한 수준임이 나타난다. 반면 개인소득과세나 법인소득과세 분야에서의 실제 조세부담률이 부담능력수준과 비교하여 너무 낮은 수준임이 나타나

<표 4-7> 우리나라의 세원별 실제 조세부담률과 추정 조세부담
능력의 비교

세 원	실제 조세 부담률(A)	추정 조세 부담능력(B)	차 이 (A-B)
개인소득과세(INDTR)	0.0247	0.0334526	- 0.0087526
법인 및 수출과세(CPXTR)	0.0204	0.0414703	- 0.0210703
내국소비과세(DOMTR)	0.0744	0.0750861	- 0.0006861
수입과세(IMPTR)	0.0263	0.0304154	- 0.0041154
사회보장기여금(SSCR)	0.0027	0.0344104	- 0.0317104
재산과세(PRPTR)	0.0148	0.0067854	+ 0.0080146
합 계(사회보장기여금 제외)	0.1606	0.1872098	- 0.0266098
합 계(사회보장기여금 포함)	0.1633	0.2216202	- 0.0583202

주: 1. 실제 조세부담률과 추정 조세부담능력은 1985년부터 1987년 사이 3년간
관측치의 평균에 의한.

2. 조세부담률 및 조세부담능력은 GDP 대비 비율로 나타난 것임.

는바, 향후 직·간접 비율의 시정문제는 내국소비세 부담률의 저하가 아니라 개인 및 법인소득과세의 강화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득과세 내에서도 개인소득과세보다 법인소득과세분야에 조세부담률 증대여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각종 비과세, 감면 등이 개인보다 주로 법인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이러한 비과세·감면의 축소로 법인소득과세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앞으로도 계속 인하할 계획으로 있는 우리나라의 관세정책 방향은 국제적인 평균의 개념에서 보았을 때 너무 前向的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관세율을 인하할 경우 국내산업과 외국산업간의 경쟁력을 촉진시킨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국내에서 우리 산업의 입지를 약화시키

고, 무역적자를 증대시키며, 재정수입도 확보하기 어렵게 한다는 관점에서 현재에도 국제 평균치보다 낮은 關稅率을 引下하려는 計劃은 再考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된다.

셋째, 재산과세의 실제부담률이 의외로 부담능력수준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재산과세의 과세표준인 재산가액 대비 재산세액으로 측정되는 실효 재산세율은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낮다. 그러나 외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재산가액이 우리나라의 GNP와 대비하여 너무 높게 평가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해가 가는 현상이다. 부동산 등 자산가액이 너무 높게 평가되어 있는 경우 과소비를 유발한다든가 기업 투자구조의 불건전화를 초래하며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감퇴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재산과세의 정책 방향은 재산과세의 실효세율을 인상하기보다는 너무 높게 평가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자산가액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財産課稅의 전체적인 수준보다는 構成面을 檢討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이 너무 낮은 점이다. 향후 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福祉財政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러한 복지재정 수요는 사회보장기여금제도의 정비로 상당 부분이 충당되어야 할 것이다.

V. 요약 및 맺는 말

조세란 개개의 세목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전체로서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여 세제에 요구되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있다(車軒權, 1985). 따라서 전체적인 租稅負擔率뿐만 아니라 租稅體系 내지는 租稅構造도 분석의 대상이 되는데, 本稿에서는 이러한 租稅體系의 適正化 문제를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本稿에서 방법론상의 새로운 점은 다음과 같다. 所得課稅 對 消費課稅 比率의 適正化 문제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개발된 이론적 모형(제2장에 소개된 문헌을 참조)이 많이 있고, 이러한 이론적 모형을 우리나라의 통계자료에 적용해 본 시도(表鶴吉, 1985)도 있었는데 당시 통계자료의 처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本稿는 우리나라의 適正 所得課稅 對 消費課稅의 比率를 분석함에 있어 이러한 통계자료의 처리방법을 개선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①임금률과 노동공급량에 관한 통계의 이용에 있어 가계의 능력분포에 관한 이론적 가정을 근거로 하여 추정된 값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현실의 자료(노동통계연감의 통계)를 이용하였으며, ②소득세율과 면세점의 추정에 있어서 보통최소자승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룹 데이터의 異分散性을 시정한 후에 종속변수인 소득세가 負(-)의 값을 가질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Tobit모형을 이용하였고, ③소비세율의 추정에 있어서 갑근세 납세의무자 1인당 평균 갑근세 납부액을 기초로 간접적으로 추정하지 아니하고 財貨 및 用役稅의 總額을 최종소비지출로 나누는 직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소득과세 對 소비과세 비율의 적정화에 대하여는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에 비하여 직접세 내의 所得課稅 對 財產課稅 比率의 適正化에 대하여는 별 논의가 없었던 것 같다. 本稿는 재산과세의 근거와 경제적

효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재산과세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재산과세가 應益課稅나 應能課稅의 어느 기준으로도 합리화되기 어렵고 재산과세를 어떠한 경제정책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비효율적임이 나타나며, 따라서 이와는 다른 관점에서 재산과세의 역할이 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所得再分配에 관한 우리 사회의 價値判斷을 이상적으로 반영한 것이 현행 所得稅制이며 현행 소득세는 包括的 所得稅(comprehensive income tax)를 이상으로 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財産課稅는 현행 소득세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소득을 간접적으로 과세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 등 부동산의 가액이 GNP에 비하여 너무 높게 평가되어 있으며, 이렇게 높게 평가되어 있는 부동산으로부터 매년 막대한 소득이 발생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自家消費되는 부동산의 임대소득(歸屬賃料, imputed rent)이 전혀 과세되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장래의 양도시점으로 이연(課稅移延, tax deferral)됨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감소되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부분은 소득세로써 직접 과세하기가 어려운 것이므로 재산세로써 간접적으로 과세하여 재산과세가 所得稅를 補完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財産課稅의 比重을 설정해 보았다.

이상의 이론적 논의가 現存하는 각국의 조세구조와 어떻게 조화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各國의 조세관련 統計資料를 이용하여 稅源別 租稅負擔能力을 추정하는 方程式을 도출하였다. 지금까지 한 국가의 총체적 조세부담능력을 회귀분석한 연구결과는 많이 있었으나, 우리와 같이 세원별로 조세부담능력을 추정한 예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本稿에서는 특히 세원별 조세부담능력을 결정하는 변수로서 ①각 세원의 과세표준과 ②다른 稅源에서 징수 가능한 稅收를 사용하였다. 특히, 한 세원의 조세부담능력을 결정하는 변수 가운데 당해 세원의 과세표준이

외에 다른 稅源에서 징수 가능한 稅收를 사용한 것은 租稅의 상호의존성 내지는 體系性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所得課稅 對 消費課稅 比率의 適正化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가계가 사회적 형평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여 소득과세 위주의 조세체계를 선호하는 데 반하여 현행 세제는 사회적 형평을 거의 고려하고 있지 않고, 소득세율이나 소득과세의 비중에 비하여 소득세 면세점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소득과세와 소비과세의 비중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는 상당 부분이 사회적 형평에 대한 가치판단의 문제이며, 따라서 향후 사회적 형평에 대한 고려가 어느 정도 강화된다면 소득과세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사회후생을 증가시킨다. 소득과세의 비중을 높일 경우 한계소득세율을 인상하는 것보다 각종 소득공제의 인상을 억제하고 비과세·감면을 축소 조정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현행 稅收를 유지하는 선에서 세제를 개편한다면 소득과세의 세수가 증대되는 부분만큼 消費課稅의 稅收가 감소되어야 할 것이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 재정수요가 현재 매우 크게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여 增稅를 전제로 세제를 개편한다면 소비과세의 세수를 대폭 감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의 내국소비세 부담률(내국소비세의 對 GNP 비율)이 국제적인 관점에서 본 내국소비세의 부담능력수준과 비슷한 수준임을 고려할 때, 향후 직·간세 비율의 시정문제는 내국소비세의 부담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세의 부담률을 높임으로써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내국소비세 부담률의 대폭 감축은 어렵기 때문에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의 세율조정은 곤란하다 하더라도, 소득과세 비중의 증대와 소비과세 비중의 감소가 사회후생을 크게 증대시킨다는 점을 고려하여 個別消費稅인 특별소비세, 주세 그리고 지방세 일부 세목에 있어서 세율

의 부분적인 인하 내지는 과세대상의 축소 조정은 增稅를 전제로 세제 개편을 하는 경우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제4장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재산과세 부담률(재산과세의 對 GNP 비율)은 국제적 평균 수준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나는 데 반하여, 제3장의 분석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산(특히 토지)보유과세의 비중이 너무나 낮으며 소득세의 보완세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는 토지보유과세의 비중이 현재보다 4.5배 가량 증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았다. 일견 상충되는 듯한 이러한 두 주장은 다음의 <표 5-1>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재산과세 부담률은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임이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의 거래·이전·취득관련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은 반면, 재산보유세의 부담률은 일본과 대만의 약 2분의 1 수준, 미국의 약 4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대만의 경우 자본이득과세(土地增值稅)의 비중이 높은 점이 특이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적인 재산과세의 부담률은 외국과 비교하여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나, 재산과세의 구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래·이전관련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을 경우 부동산의 거래를 위축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향후 재산과세의 정책은 부동산 보유세의 비중을 현재보다 4~5배 증가시키는 반면 거래·이전관련 재산세를 대폭 감소시키는 방향에서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법인관련과세 및 관세 그리고 사회보장기여금에 관하여는 제2장 및 제3장에서와 같은 이론적 모형에 의한 분석을 하지 못하였고 제4장에서의 경험적 분석만 하였는데 그 분석결과가 그대로 정책방향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法人關聯 租稅負擔率이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낮았는데, 향후 각종 비과세·감면을 축소 조정함으로써 법인관련 조세부담률을 상당수준 제고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關稅負擔率은 조세정

<표 5-1> 각국의 재산관련 과세의 구조

	한 국 (1991년, 10억원)	일 본 (1990년, 10억엔)	대 만 (1990년, 백만NT달러)	미 국 (1989년, 백만달러)
국민총생산	206,027	436,927	4,155,121	5,200,800
자본이득과세	1,568(0.8)	n.a.	82,916(2.0)	59,933(1.2)
재산과세	7,013(3.4)	12,295(2.8)	166,890(4.0)	157,243(3.0)
• 부동산보유세	1,488(0.7)	7,098(1.6)	50,069(1.2)	142,524(2.7)
• 상속·증여세	373(0.2)	1,918(0.4)	6,490(0.2)	12,256(0.2)
• 거래·이전세	3,774(1.8)	3,279(0.8)	110,331(2.6)	2,463(0.1)
• 기타 재산세	1,378(0.7)	-	-	-
총재산관련과세	8,581(4.2)	n.a.	249,806(6.0)	217,176(4.2)

주: 1. () 안의 숫자는 국민총생산 대비 비율(%)을 나타낸 것임.

2. 부동산 보유세는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재산할, 토초세, 재평가세를 더한 것임.

3. 거래·이전세는 우리나라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 인지세, 증권거래세를 더한 것임.

4. 기타 재산세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세, 지방세분 방위세, 지방세분 교육세를 더한 것임.

5. n.a.는 not available을 나타냄.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for OECD Member Countries*, 1991.

재무부 세제실, 『주요세무통계자료』, 1992.

財政部 統計處, 『賦稅統計年報』, 1991(대만).

책보다는 주로 산업정책의 견지에서 적정수준이 설정되어야 하겠으나, 현재의 관세부담률은 국제적 평균치에 비해서 너무 낮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은 소득수준에 비하여 너무 낮은데, 앞으로 복지재정 수요의 상당 부분이 사회보장기여금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충당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參 考 文 獻

- 金明淑, 「주택소유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경제적 효과 : 기존연구의 개관 및 정책 시사점」, 『한국개발연구』, 제12권 제2호, 한국개발연구원, 1990 여름, pp.135~149.
- _____, 「토지세의 투기억제효과와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 제6권, 1990, pp.96~114.
- 金泰東·李根植, 『땅, 투기의 대상인가, 삶의 터전인가』, 비봉출판사, 1989.
- 孫光洛·安鍾範, 「조세부담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 제8권, 1993 출간예정.
- 孫在英, 「토지보유과세 강화의 당위성에 대한 검토」, 『한국개발연구』, 제14권 제3호, 한국개발연구원, 1992 가을, pp.81~104.
- 李性旭, 「부동산세제의 정책과제와 개선방향」, 『세계개혁의 과제와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3.4.
- 張五鉉, 「한국의 재산세 귀착에 관한 실증연구」, 『재정논집』, 제6편, 1992.3, pp.67~93.
- 조재민, 『부동산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매일경제신문사, 1991.
- 車駟權, 「한국세제의 기본과제」, 『세계발전연구 기초자료』, 총괄제도연구분과위원회, 1985. 11.
- _____, 『재정학 개론』, 박영사, 1986.
- 崔 洸, 「소비세제의 정책과제와 개선방향」, 한국개발연구원, 1987. 12.
- 表鶴吉, 「우리나라의 적정 직·간세 비율에 관한 검토」, 『세계발전연구 기초자료』, 총괄제도연구분과위원회, 1985. 11.
- 本間正明 외, 「直間比率の 經濟分析」, 『經濟研究』, 제36권 제2호, 1985. 4.

- Atkinson, A.B., N.H. Stern and C.J. Gomulka, "On the Switch from Direct to Indirect Taxat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980, pp.195~224.
- Bahl, R.W., "A Representative Tax System Approach to Measuring Tax Effort in Developing Countries", *IMF Staff Papers*, Vol.19, No.1, 1972, pp.87~124.
- Bentick, Brian L., "The Impact of Taxation and Valuation Practices on the Timing and Efficiency of Land Us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7, August 1979, pp.859~868.
- Bourassa, S.C., "Economic Effects of Taxes on Land: A Review",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Vol.51, 1992, pp.109~112.
- Chelliah, R.J., H.J. Bass and M.R. Kelly, "Tax Ratios and Tax Effort in Developing Countries, 1969~1971", *IMF Staff Papers*, Vol.22, No.1, 1975, pp.187~205.
- Feldstein, Martin, "The Surprising Incidence of a Tax on Pure Rent : A New Answer to an Old Ques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85 , 1977, pp.349~360.
- Lotz, J.R. and E.R. Morss, "Measuring 'Tax Effort' in Developing Countries", *IMF Staff Papers*, Vol.14, 1967, pp.478~499.
- Mills, David E., "The Non-Neutrality of Land Taxation", *National Tax Journal*, March 1981.
- Rosen, H.S., *Public Finance*, Richard D. Irwin Inc., 1985.
- Stern, N.H., "On the Specification of Models of Optimum Income Taxat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June 1976, pp. 123~162.

- Tabellini, G., "International Tax Comparisons Reconsidered", *IMF Fiscal Affairs Department* DM/85/34, 1985.
- Tait, A.A, W.L.M. Grätz and B.J. Eichengreen,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Taxation for Selected Developing Countries, 1972~1976", *IMF Staff Papers*, Vol.26, No.1, 1979, pp.123~156.
- Tanzi, V., "Quantitative Characteristics of the Tax Systems of Developing Countries", *IMF Fiscal Affairs Department* DM/83/79, 1983.
- Tideman, T.N., "A Tax on Land Value Is Neutral", *National Tax Journal*, March 1982.

